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기획재정위원회 】

2020.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0. 7. 29~3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61조에 따라 감사원 결산검사를 마친 국가결산보고서를 지난 6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 심의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심의를 통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회는 제21대 국회의 첫 번째 결산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473.1조원, 총지출은 485.1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가경제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커지는 추세에서, 지난 재정운용 상황을 검토·분석하여 그 방향성과 효율성을 살펴볼 필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고자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8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소재·부품·장비 지원사업, 생활 SOC사업 등 주요 재정 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8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결산서를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성인지 결산서의 실효성과 제도개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중 후

차 례

CONTENTS

[기획재정부]

I. 결산 개요

- 1. 현 황 1
-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7
-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8

II. 주요 현안 분석

- 1. 정부출자수입 관리 강화 필요 9
- 2. 총수입 관리 강화 필요 15
-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 시정 19
- 4. 재정 조기집행 관리제도 보완방안 25
- 5. 복권기금 성과관리 강화 필요 32
 - 5-1.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환류 강화 필요 33
 - 5-2. 복권기금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법정기한 준수 필요 37
- 6. 공공기관 결산 기간 단축 필요 41
- 7.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규모의 적정성 논의 필요 44

III. 개별 사업 분석

- 1.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46
- 2. 지식협력단지 활용실적 제고 필요 50
- 3. 공공기관 정보제공 홈페이지들의 일부 통합 검토 필요 53
-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재구축 사업일정 관리 철저 필요 57
- 5.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 집행 제고를 위한 사업진행컨설팅 개선 필요 59

※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 64



CONTENTS

[국세청]

I. 결산 개요

- 1. 현 황 67
-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71
-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72

II. 주요 현안 분석

- 1. 국세청의 청렴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73
- 2. 국세청 상담센터의 응답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78
- 3. 과태료 수납률 제고 노력 필요 83
- 4. 국세징수활동지원 사업의 조세범칙처분을 관리 필요 86
- 5. 근로·자녀장려세제 신청안내문 및 지급통지서의 모바일 전환 노력 필요 89

[관세청]

I. 결산 개요

- 1. 현 황 95
-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99
-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00

II. 주요 현안 분석

- 1. 수출입 증가 등에 따른 통관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필요성 101

III. 개별 사업 분석

- 1. 조사감시용 드론 도입 및 운용상 문제점 106
- 2.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이용 실적 저조 111
- 3. 감시정의 적시·적정가 매각을 통한 수입 증대 노력 필요 116



CONTENTS

[조달청]

I. 결산 개요

- 1. 현 황 121
-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26
-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27

II. 주요 현안 분석

- 1. 혁신시제품 사업 관리 필요 128
- 2. 부산 금곡비축기지 매각사업 관리 필요 134

[통계청]

I. 결산 개요

- 1. 현 황 139
-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43
-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44

II. 주요 현안 분석

- 1. 시험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준비 필요 145
- 2. 가계동향조사 시계열 연결방안 마련 필요 150



기획재정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37조 2,832억 9,800만원이며, 381조 8,947억 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8.0%인 335조 9,824억 4,100만원을 수납하고 3조 7,568억 2,5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42조 1,555억 1,400만원을 불납 결손처리 하였다.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24,362,652	327,245,472	327,245,472	371,591,057	325,678,718	3,756,825	42,155,514	87.6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9,876,961	10,037,826	10,037,826	10,303,724	10,303,724	0	0	100.0
합계	334,239,613	337,283,298	337,283,298	381,894,781	335,982,441	3,756,825	42,155,514	88.0

자료: 기획재정부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3조 9,863억 600만원이며, 이 중 90.1%인 12조 6,040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114억 2,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조 3,708억 3,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윤여문 예산분석관(doors82@assembly.go.kr, 6788-4625)

이강구 예산분석관(klce@assembly.go.kr, 6788-4626)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5,979,065	16,102,501	13,986,306	12,604,051	11,422	1,370,833	90.1

자료: 기획재정부

나. 기금 결산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286조 5,908억 9,300만원이며, 271조 8,961억 8,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00.0%인 271조 8,871억 3,200만원을 수납하고 90억 5,0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공공자금관리기금	175,195,794	177,983,108	177,983,108	179,120,697	179,120,694	3	0	100.0
국유재산관리기금	1,511,083	1,511,083	1,511,083	1,977,236	1,977,236	0	0	100.0
대외경제협력기금	1,367,383	1,367,383	1,367,383	1,285,914	1,278,075	7,839	0	99.4
복권기금	5,637,328	5,905,150	5,905,150	5,808,197	5,806,989	1,208	0	100.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581,369	581,369	581,369	648,777	648,777	0	0	100.0
외국환평형기금	99,242,800	99,242,800	99,242,800	83,055,361	83,055,361	0	0	100.0
합계	283,535,757	286,590,893	286,590,893	271,896,182	271,887,132	9,050	0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지출현액은 286조 8,985억 5,900만원이며, 이 중 94.8%인 271조 8,871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1,995억 6,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조 8,530억 8,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공공자금관리기금	175,195,794	177,983,108	177,983,108	179,120,694	0	4,656,723	100.6
국유재산관리기금	1,511,083	1,511,083	1,813,329	1,977,236	192,955	36,697	109.0
대외경제협력기금	1,367,383	1,367,383	1,372,789	1,278,075	6,606	104,363	93.1
복권기금	5,637,328	5,905,150	5,905,164	5,806,989	0	41,395	98.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581,369	581,369	581,369	648,777	0	20,882	111.6
외국환평형기금	99,242,800	99,242,800	99,242,800	83,055,361	0	993,026	83.7
합계	283,535,757	286,590,893	286,898,559	271,887,132	199,561	5,853,086	94.8

자료: 기획재정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627억 8,400만원 (0.1%)이 증가한 300조 3,683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6,206억 9,600만원(0.2%)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92,813,937	293,459,485	293,760,785	292,699,817	△1,060,968	△114,120
기금	6,933,686	6,344,750	6,344,750	7,668,502	1,323,752	734,816
합계	299,747,623	299,804,235	300,105,535	300,368,319	262,784	620,696

자료: 기획재정부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 4,085억 4,300만원 (11.9%)이 감소한 17조 8,819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841억 2,800만원(1.6%)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977,134	3,462,314	3,492,314	1,048,137	△2,444,177	71,003
기금	16,620,715	16,798,206	16,798,206	16,833,840	35,634	213,125
합계	17,597,849	20,260,520	20,290,520	17,881,977	△2,408,543	284,128

자료: 기획재정부

라.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기획재정부의 자산은 413조 1,216억 3,000만원, 부채는 666조 3,023억 1,600만원으로 순자산은 △253조 1,806억 8,7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20조 101억 5,700만원, 투자자산 267조 4,984억 4,400만원, 일반유형자산 25조 1,096억 5,300만원, 무형자산 291억 2,1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4,742억 5,4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7조 7,627억 2,900만원(10.1%) 증가하였다. 이는 단기금융상품 증가 등에 따른 유동자산 20조 8,466억 7,300만원 증가, 건축 및 구축물 증가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1조 5,137억 8,8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67조 5,705억 6,700만원, 장기차입부채 597조 5,713억 200만원, 장기충당부채 543억 6,6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1조 1,060억 8,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0조 6,176억 7,500만원(8.2%) 증가하였다. 이는 단기차입금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8조 646억 2,600만원 증가, 국채 및 장기차입금 증가 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42조 3,828억 2,9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375,358,901	413,121,630	37,762,729	10.1 %
Ⅰ. 유동자산	99,163,484	120,010,157	20,846,673	21.0 %
Ⅱ. 투자자산	252,001,952	267,498,444	15,496,492	6.1 %
Ⅲ. 일반유형자산	23,595,865	25,109,653	1,513,788	6.4 %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24,381	29,121	4,740	19.4 %
Ⅵ. 기타비유동자산	573,220	474,254	△98,966	△17.3 %
부 채	615,684,641	666,302,316	50,617,675	8.2 %
Ⅰ. 유동부채	59,505,941	67,570,567	8,064,626	13.6 %
Ⅱ. 장기차입부채	555,188,473	597,571,302	42,382,829	7.6 %
Ⅲ. 장기충당부채	45,898	54,366	8,468	18.4 %
Ⅳ. 기타비유동부채	944,329	1,106,081	161,752	17.1 %
순 자 산	△240,325,740	△253,180,687	△12,854,947	5.3 %
Ⅰ. 기본순자산	△962,532	△962,532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253,804,478	△285,199,500	△31,395,022	12.4 %
Ⅲ. 순자산 조정	14,441,270	32,981,345	18,540,075	128.4 %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비용이 재정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6조 9,614억 4,4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22조 7,090억 8,200만원, 관리운영비 2,193억 400만원, 비배분비용 2조 3,013억 3,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5조 7,476억 3,600만원, 비배분수익 3조 6,198억 3,600만원, 비교환수익 등 △2조 4,252억 4,7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조 1,493억 9,400만원(24.4%) 증가한 5조 8,622억 4,5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 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6,737억 2,500만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총 27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 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공공자금관리 프로그램 (15조 8,803억 200만원)과 국제금융 프로그램(9,306억 9,200만원), 예비비 프로그램 (5,8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945억 5,000만원과 경비 1,247억 5,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7,112억 8,400만원과 평가손실 1,943억 4,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6,287,719	6,961,444	673,725	10.7 %
가. 프로그램 총원가	21,777,621	22,709,082	931,461	4.3 %
나. 프로그램 수익	△15,489,902	△15,747,638	△257,736	1.7 %
II. 관리운영비	266,795	219,304	△47,491	△17.8 %
III. 비배분비용	2,476,718	2,301,333	△175,385	△7.1 %
IV. 비배분수익	4,318,381	3,619,836	△698,545	△16.2 %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712,851	5,862,245	1,149,394	24.4 %
VI. 비교환수익 등	△1,903,945	△2,425,247	△521,302	27.4 %
VII. 재정운영결과(V-VI)	6,616,796	8,287,492	1,670,696	25.2 %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240조 3,257억 4,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53조 1,806억 8,7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2조 8,549억 4,700만원(5.3%)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기초 대비 1조 6,706억 9,600만원,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21조 1,611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22조 3,833억 8,300만원 감소하여 순자산 차감항목·가산항목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24조 9,174억 3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48조 245억 7,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 20조 7,334억 4,0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230,363,697	△240,325,740	△9,962,043	4.3 %
II. 재정운영결과	6,616,796	8,287,492	1,670,696	25.2 %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724,147	△23,107,530	△22,383,383	3,091.0 %
IV. 조정항목	△2,621,101	18,540,076	21,161,177	807.3 %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240,325,740	△253,180,687	△12,854,947	5.3 %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일부 국세수입, ②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③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④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비 등이 있다.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에서 유류비 인하를 반영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1조 94억원을 감액(15조 7,860억원 → 14조 7,766억원)되었다. 세출예산에서는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과다 편성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액 90억원(100억원 → 10억원)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금 200억원(7,999억 9,000만원 → 7,799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다. 연내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 50억원이 감액(230억 4,200만원 → 180억 4,200만원)되었다¹⁾.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협동조합활성화사업 등이 있다.

협동조합활성화사업에서 사회적경제박람회 등의 예산 4억 6,000만원이 증액(53억 7,000만원 → 58억 3,000만원)되었다²⁾.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사업 등이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사업은 배당금의 사내유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보다 배당금을 정부에 지급하고 이를 다시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200억원이 감액(500억원 → 300억원)되었다³⁾.

1) 기획재정부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10.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2) 기획재정부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10.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7.

기획재정부는 ①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② 규제패러다임 전환 및 산업 혁신, ③ 민생 개선과 경제 포용성 강화, ④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혁신 추진 등을 2019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정부출자수입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9회계연도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출자기관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배당금 일부 경감하였으나, 정부출자기관의 경기대응기능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의 확대 필요성과 별개로 이러한 우회적인 지원 방식이 직접적인 재정지출에 비해 재정운용 수단으로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총수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9회계연도 총수입은 2015회계연도 이후 4년만에 수입결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총수입 결손은 경기변동뿐 아니라 최근 재정수입의 미수납 및 불납결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도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을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연례적으로 세입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이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적정한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규모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은 금리 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일정부분 완충규모가 필요하나,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계획규모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정부출자수입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정부출자수입¹⁾은 정부가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수입을 계상하는 세입과목이다. 2019회계연도 기준 정부출자기관은 총 38개이며, 이 중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 출자기관(총 30개)과 외국환평형기금 출자기관(1개)을 소관한다.

2019년 기획재정부 정부출자수입은 예산현액 7,277억 2,600만원의 96.8%인 7,041억 6,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 받았다.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정부출자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97,294	697,294	-	697,294	677,992	677,992	-	-	100.0
외국환평형기금	30,432	30,432	-	30,432	26,177	26,177	-	-	100.0
계	727,726	727,726	-	727,726	704,169	704,169	-	-	100.0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다른 부처 소관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정부출자수입 전체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총 7,504억 9,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 받았다.

윤여문 예산분석관(doors82@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및 외국환평형기금 52-521

[2019회계연도 정부출자수입 총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소관	회계/기금	추경 예산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697,294	697,294	677,992	677,992	-	-	100.0
	외국환평형기금	30,432	30,432	26,177	26,177	-	-	10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진흥기금	0	0	189	189	0	0	100.0
	방송통신발전기금	0	0	1,112	1,112	0	0	100.0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	22,418	22,418	5,648	5,648	0	0	100.0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32,341	32,341	36,902	36,902	0	0	100.0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505,228	505,228	392,159	392,159	0	0	100.0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376,668	376,668	311,309	311,309	0	0	100.0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810	810	0	0	0	0	-
해양수산부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	1,599	1,599	3,128	3,128	0	0	100.0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0	0	46	46	0	0	100.0
합계		939,064	939,064	750,493	750,493	0	0	100.0

주: 대상기관은 여러 회계·기금에 걸쳐 있는 기관이 있어 합계가 불일치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나. 분석의견

정부는 2019회계연도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출자기관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배당금 일부를 경감하였으나, 이러한 우회적인 지원 방식이 직접적인 재정지출에 비해 재정운용 수단으로서 바람직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출자수입’ 수납실적은 2014년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방향」의 정부출자기관 배당규모 확대 방침²⁾에 따라 2018회계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정부출자수입은 전년 대비 △20.4%(△3,678억원) 감소한 1조 4,382억원으로서, 5년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18~2019년 정부출자수입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2015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A)	2019회계연도(B)	
						증감률 [(B-A)/A]
일반회계	5,065	7,323	7,888	8,622	6,696	△22.3
특별회계· 기금	3,704	4,890	7,674	9,438	7,685	△18.6
합계	8,769	12,213	15,562	18,060	14,382	△20.4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9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4,382억원 수납 확정」, 2019.5.21. 등을 바탕으로 제작성

- 2) 기획재정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방향」, 2014. 12. 19.은 2014년말 해외 주요국 공기업 배당수준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배당성향을 40%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는 중기목표를 제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른 정부 목표 및 실적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목표 및 실적 현황]

(단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배당성향 목표	25.00	28.00	31.00	34.00	37.00
배당성향 실적	26.13	30.25	31.89	34.98	32.48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정부출자주식 배당금 수납 관련 보도자료

이렇듯 정부출자수입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정부출자기관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음 표와 같이 총 10개 기관에 대해 투자 확대를 전제로 1.5조원의 배당금을 경감한 것에 기인한다³⁾.

[출자기관별 주요 경제활력제고 투자 과제]

기관	투자 과제
산업은행	4차 산업혁명 지원 특별자금 공급
	STX조선해양 경영정상화 지원
	글로벌챌린저스200 중견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펀드
	혁신성장 지원 특별자금 공급
	혁신성장지원펀드
	현대상선 경영정상화 지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펀드
기업은행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펀드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펀드
	주력 산업 경쟁력강화 금융지원 프로그램
	창업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
	환경안전투자 지원 펀드
수출입은행	초고위험국 건설 수주 활력 제고 목적 특별계정 신설
인천공항공사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주택도시보증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전세금반환보증확대
토지주택공사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도시재생뉴딜 등 지역균형발전사업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등 서민주거대출 보증확대
공항공사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도로공사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부산항만공사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출자기관 경제활력투자 집행 점검 실시」, 2019. 5. 28.

3) 정부출자수입은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어 그 감면규모 또한 일의적으로 집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2019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정부가 정부출자기관 투자확대를 위하여 총 1.5조원의 배당금을 감액 조정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를 근거로 분석을 실시한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9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4,382억원 수납 확정」, 2019.5.21.)

우선 최근과 같이 국내·외 경기여건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경기변동폭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정부출자기관의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것 자체는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의 명시적인 재정지출이 아닌 배당금 축소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배당금 축소는 정부 재정총량에 대한 정보를 교란시킬 수 있다. 배당금 축소는 사실상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재정지원과 동일한 행위이나, 정부 예산서상 수입(정부출자수입) 및 지출(보조·출연 등)에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규모·수지 및 분야별 재원배분 등 각종 재정총량 정보를 왜곡시킨다. 특히,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조세지출·국유재산특례지출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정보 공개 및 국회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배당금 축소는 이러한 통제 절차도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배당금을 당초 목표대로 수납받았다면, 이는 각 회계·기금의 일반 재원으로 이입되기 때문에 해당 재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상대적으로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반면, 배당금 감면 방식은 해당 연도에 수익이 발생하여 배당금 납부가 가능한 소수의 정부출자기관을 통해서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의 폭이 축소될 수 있다.

셋째, 배당금 축소를 통한 정부출자기관의 투자 촉진 방식은 정부 예산을 직접 교부하는 것에 비해 집행실적을 관리하는 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가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받아 이를 보조·출연 등의 형식으로 다시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세부 내역이 국회의 의결을 받고 집행 과정에서도 「국가재정법」에 따른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각종 제약이 수반된다. 그러나 배당금 감면을 통한 투자확대는 정부와 정부출자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속력이나 통제장치가 미흡하다. 한편, 정부도 이를 고려하여 2019년 5월 ‘정부출자기관 경제활력투자 집행 점검’을 실시⁴⁾하는 등 정부출자기관의 투자계획 이행 실태를 관리하였으나, 당초 배당금

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출자기관 경제활력투자 집행 점검 실시」, 2019. 5. 28.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고국장 주재로 2019년 5월 28.~30일간 투자실적을 점검하고 신규 투자과제를 발굴 구체화하였다.

축소라는 수단을 택했기 때문에 공공투자나 재정집행 관리 전문부서가 아닌 정부
배당금의 주무부서(기획재정부 국고국)가 이를 관리하게 되어 재정집행 관리의
전문성 및 통일성을 고려할 때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전술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출자
기관의 투자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가급적 배당금 축소 등 우회적인 지원방식을 최소화하고 배당금을 원칙대로 징수한
후 이를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직접적·명시적인 방식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2019회계연도 총수입 수납액은 세입예산외 수입을 포함할 때 473.1조원으로서 국세수입 293.5조원, 세외수입 25.3조원, 기금수입 154.0조원 및 세입예산외 수입 0.4조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전년 대비 7.8조원 증가한 규모이나, 추경예산 대비로는 3.3조원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2019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단위: 조원, %)

구 분	2018		2019				전년대비 (C-A)
	결산 (A)	추경대비	본예산	추경예산 (B)	결산 (C)	추경대비 (C-B)	
총수입	465.3	17.6	476.1	476.4	473.1	△3.3	7.8
국세수입	293.6	25.4	294.8	294.8	293.5	△1.3	△0.1
세외수입	26.0	△1.2	26.6	26.9	25.3	△1.6	△0.8
기금수입	145.1	△7.3	154.7	154.7	154.0	△0.7	8.9
세입예산외 수입 ¹⁾	0.6	0.6	-	-	0.4	0.4	△0.2

주: 1) 세입예산외 수입은 「국고금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세출외로 관리하는 한국은행 국고금 통합계정 여유자금의 운용수익 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2019 나라살림 예산개요」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2019회계연도 총수입은 2015회계연도 이후 4년만에 수입결손이 발생하였다.

2019회계연도 총수입 수납액은 세입예산외 수입을 포함해도 473.1조원으로서 추경예산 대비 3.3조원 결손이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세수입은 경기적 요인으로 법인세·관세 등이 감소하여 추경예산 대비 △1.3조원 결손이 발생하였고, 세외수입은 법무부 벌금및과료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의 미수납 등으로 △1.6조원 결손이 발생

하였으며, 기금수입도 주택도시기금 민간용자 원금·이자의 대규모 미상환 등에 따라 △0.7조원 결손이 발생하여 총수입 결산액은 세입예산외 수입 0.4조원을 상계한 총 △3.3조원만큼 과소수납되었다.

정부 총수입은 2015회계연도 마지막으로 추경예산 대비 결손이 발생한 이후 2016~2018회계연도간은 계속 초과수납되었으나, 4년만에 다시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2015~2019회계연도 총수입 초과·과소수납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추경예산(A)	377.7	401.0	423.1	447.7	476.4
결산(B)	371.8	401.8	430.6	465.3	473.1
초과·과소수납(B-A)	△5.8	+0.8	+ 7.5	+17.6	△3.3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총수입 결손은 경기변동뿐 아니라 최근 재정수입의 미수납 및 불납결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도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5년간 수입예산의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과 불납결손액 규모¹⁾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5 회계연도의 총수입 기준 미수납실적은 징수결정액 대비 9.6%(39.7조원)이었으나, 2019회계연도에는 11.4%(58.1조원)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불납결손 규모도 2015회계연도 3.2조원에서 2019회계연도 4.6조원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 미수납과 달리 불납결손은 해당연도 징수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이 아닌 절대규모로 변동 추세를 분석하였다.

[2015~2019회계연도 총수입 기준 미수납·불납결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미수납액(B)		불납결손액
				징수결정대비(B/A)	
2015	350,970,496	414,692,135	39,683,211	9.6	3,185,429
2016	374,513,600	450,689,930	45,091,316	10.0	3,763,131
2017	386,670,374	487,103,081	50,891,452	10.4	4,089,795
2018	420,717,280	526,200,952	54,956,013	10.4	4,696,673
2019	451,029,777	510,386,108	58,089,808	11.4	4,551,980

주: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20)와 일반회계 기타유가증권매각대(843)는 여유자금운용의 성격을 가지며, 정부의 징수의지와 별개로 수납소요가 발생하여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제외하고 산정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이러한 현상은 재정수입 중 가장 비중이 큰 국세수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5회계연도 국세수입 미수납실적은 징수결정액 대비 11.0%(27.3조원)이었으나, 2019회계연도에는 12.2%(41.4조원)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불납결손 규모도 2015회계연도 2.3조원에서 2019회계연도 3.8조원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2019회계연도 국세수입 미수납·불납결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미수납액(B)		불납결손액
				징수결정대비(B/A)	
2015	215,734,600	247,515,235	27,298,214	11.0	2,331,966
2016	232,739,000	276,921,147	31,466,383	11.4	2,893,106
2017	251,076,600	304,078,991	35,298,104	11.6	3,396,028
2018	268,129,000	336,501,785	39,008,015	11.6	3,923,372
2019	294,791,950	338,602,152	41,390,987	12.2	3,756,825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재정수입의 미수납 및 불납결손은 재정건전성 악화뿐 아니라 납세자 간 불공정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 또한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국세 수납률 저조를 우려하며 “세목별 수납실적 저조 사유를 분석하고, 미수납채권에 대한 회수방안을 수립할 것”²⁾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① 신용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³⁾를 2019년부터 도입하였고, ② 2020년부터는 감치명령제도⁴⁾가 도입되었으며, ③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채납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도 추진하는 등 채납자 재산조회범위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다만, 정부의 대책은 주로 국세수입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최근 증가하는 재정의 역할확대 요구에 부응하여 재정이 적시에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수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p.176.

3) 부가가치세 채납이 많은 유흥주점업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하는 제도이다.

4)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행정벌이다.

가. 현 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라 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이다. 균특회계는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시행 및 국고보조 사업 체계의 개편¹⁾과 함께 2005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명칭으로 신설되었으며, 2009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었다가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재차 변경되었고 2019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다시 변경되었다.

균특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총 4개의 계정의 8개 사업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지역자율계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편성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보조사업으로 구성되며, 이는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분된다. 반면, 지역지원계정은 부처가 직접 편성한 사업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편성하는 사업과 부처가 직접 편성하는 사업이 혼재되어 있다.

윤여문 예산분석관(doors82@assembly.go.kr, 6788-4625)

1) 당시 533개(12조 6,568억원)의 국고보조사업 중 233개 사업(7조 9,485억원)만 기존대로 유지되고, 163개 사업(1조 689억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며, 126개 사업(3조 5,777억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구조]

편성방식 \ 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 사업 등 포함	④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 사업 등 포함
	시·군·구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⑤ 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
부처직접편성		-	⑥ 부처직접 편성사업	⑦ 부처직접 편성사업	⑧ 부처직접 편성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나. 분석의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연례적으로 세입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이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²⁾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 즉 세출에 충당하고 남은 세입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우선 이입하도록 하여, 이월하는 세출예산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산상 잉여금의 이입은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결산상 잉여금이 부족한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지 않고 세출예산만 이월하기도 하는데, 이를 실무상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이라고 칭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은 결국 결산상 잉여금을 초과하는 세출예산 이월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차감해 도출하는 세계잉여금이 음(-)의 값을 가질때 그 규모만큼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2)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⑥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우선적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이를 전제로 다음의 연도별 세계잉여금 현황표를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 지역 지원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결산상 잉여금이 각각 680억원·8억원만 발생 하였음에도 세출예산을 각각 3,045억원·316억원 이월하여 각각 2,365억원·309억원의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이 발생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회계연도별 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억원)

계정	2016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이월액	세계 잉여금	결산상 잉여금	이월액	세계 잉여금	결산상 잉여금	이월액	세계 잉여금	결산상 잉여금	이월액	세계 잉여금
합계	8,545	5,511	3,034	9,535	3,667	5,868	4,190	5,501	△1,311	2,128	4,675	△2,547
지역자율 계정	1,354	4,533	△3,180	1,939	2,633	△694	1,337	2,581	△1,244	1,345	1,313	32
지역지원 계정	6,407	905	5,502	6,585	989	5,596	1,700	2,915	△1,215	680	3,045	△2,365
제주계정	675	0	675	730	0	730	782	0	782	8	316	△309
세종계정	109	73	36	279	45	234	371	5	365	95	0	95

주: 1. 결산상 잉여금은 연도별 세입결산(수납액)에서 세출결산(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

2. 세입 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결산상잉여금 규모를 초과하는 이월액(세계잉여금의 음수값)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균특회계의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 발생 연혁을 살펴보면, 2017회계연도까지는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이 지역자율계정에서만 매년 발생하다 2018회계연도부터 최초로 지역지원계정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9회계연도에는 지역자율계정에서는 문제를 개선하였나 지역지원계정에서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이 발생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도 2019회계연도 최초로 세입 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은 사실상 수입에 대한 대책 없이 차년도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규모가 커질 경우 국가 재정건전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³⁾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은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전년도에 세출을 충당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⁴⁾. 이에 정부는 다음 2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균특회계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을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상치 못한 세입 결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이월소요보다 부족해졌기 때문이므로, 예산 편성시부터 주요 수입과목의 추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2019회계연도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이 발생한 지역지원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경우 일부 수입과목에서 대규모 결손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예를 들어 두 계정의 전년도 이월금(88-881)에서는 추경예산 대비 각각 881억원·386억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 또한 지역지원계정의 법정부담금⁵⁾에서도 추경예산 대비 1,005억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

이렇듯 수입이 과다 추계되면 세출예산도 그에 따라 과다 편성되어, 이를 충당할 재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정부는 균특회계의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규모가 큰 주요 수입과목을 중심으로 추계를 보다 면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 이에 대하여 정부는 균특회계의 이월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제1항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월금지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일 뿐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세입 우선 이입의 예외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예산의 이월) ①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지역지원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 주요 결손 수입과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추경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결손 (B-A)
지역지원 계정	전년도이월금 (기획재정부 소관)	258,126	258,126	169,980	169,980	88,146
	법정부담금 (국토교통부 소관)	275,596	275,596	768,906	175,056	100,540
제주계정	전년도이월금 (기획재정부 소관)	116,851	116,851	78,248	78,248	38,603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결산상 잉여금을 초과하는 미집행액은 차년도 집행가능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균특회계는 자치단체 매칭사업이 많은 회계의 특성상 다른 회계·기금에 비해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측면이 있다. 2016~2019회계연도 균특회계의 총지출 기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1%·95.1%·93.3%·94.1%인데, 이는 정부 회계·기금 전체의 집행률인 95.2%·96.3%·96.7%·97.8%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또한 균특회계는 교부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집행 실적은 더욱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2019회계연도 총지출 집행실적 대비 균특회계 집행실적 비교]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균특회계 집행률	92.1	95.1	93.3	94.1
총지출 기준 집행률	95.2	96.3	96.7	97.8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렇듯 저조한 집행실적으로 인해, 균특회계는 2016회계연도 이후 매년 ‘세입 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 액수 이상의 예산을 미집행하고 있다. 이는 세입 재원 없이 이월된 세출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이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2016~2019회계연도 균특회계 계정별 집행 현황(총지출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추경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지역자율 계정	2016회계연도	4,590,081	5,755,697	5,275,940	453,293	26,464	91.7
	2017회계연도	4,664,519	5,117,812	4,821,602	263,264	32,947	94.2
	2018회계연도	5,264,103	5,549,189	5,269,459	258,084	21,645	95.0
	2019회계연도	5,635,350	5,915,343	5,762,573	131,310	21,460	97.4
지역지원 계정	2016회계연도	4,964,238	5,153,416	4,771,375	90,542	291,499	92.6
	2017회계연도	4,738,568	4,829,110	4,638,802	98,896	91,412	96.1
	2018회계연도	4,283,042	4,386,492	3,982,828	291,480	112,185	90.8
	2019회계연도	4,834,014	5,176,952	4,683,017	304,539	189,396	90.5
제주계정	2016회계연도	361,795	362,195	338,338	0	23,857	93.4
	2017회계연도	325,981	325,981	325,976	0	5	100.0
	2018회계연도	321,852	321,852	321,852	0	0	100.0
	2019회계연도	336,536	336,536	303,105	31,642	1,789	90.1
세종계정	2016회계연도	103,694	105,341	97,585	7,305	450	92.6
	2017회계연도	102,649	109,954	88,552	4,511	16,891	80.5
	2018회계연도	100,428	104,939	95,487	535	8,916	91.0
	2019회계연도	103,496	104,031	100,325	0	3,706	96.4
합계	2016회계연도	10,019,808	11,376,648	10,483,238	551,140	342,270	92.1
	2017회계연도	9,831,717	10,382,857	9,874,932	366,671	141,254	95.1
	2018회계연도	9,969,425	10,362,472	9,669,626	550,099	142,747	93.3
	2019회계연도	10,909,396	11,532,862	10,849,021	467,490	216,351	94.1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정부는 균특회계 미집행분의 경우에는 차년도 집행가능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이월을 실시함으로써, ‘세입재원 없는 세출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현 황

재정집행관리¹⁾는 「국가재정법」 제97조²⁾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³⁾에 따라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재정집행 실적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본경비성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집행관리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2억 9,300만원 중 2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재정집행관리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정집행관리	278	278	15	-	293	260	88.8	-	33

자료: 기획재정부

윤여문 예산분석관(doors82@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643-300

2) 「국가재정법」

제97조(재정집행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집행 애로요인의 해소와 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집행 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 경과 후(「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은 분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월별 집행실적
2. 예산 및 기금 등의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계획
3. 각 부처 및 기관별 예산낭비신고실적 및 대응실적(법 제100조에 따른 시정요구내용 및 처리결과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나. 분석의견

최근 정부는 집행실적 관리에 있어 하반기 대비 상반기 집행목표를 높게 잡고 그 집행을 관리·이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실무상 ‘조기집행’이라고 칭한다.

2019회계연도 기준 재정집행 관리대상 기관은 45개 부처(예산 및 40개 기금), 33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체이다. 이 중 중앙부처 재정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부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으로 총 252.6조원 규모의 사업들을 선별한 후 이 중 61.7%인 155.9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5.8%인 166.2조원을 집행하여 목표를 4.1%p 초과달성하였다. 이는 목표·실적 두 측면에서 모두 역대 가장 높은 수치 해당한다.

[2015~2019년 중앙부처 조기집행 목표 및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연간집행계획 (A)	상반기 집행목표		상반기 집행실적	
		금액(B)	집행률(B/A)	금액(C)	집행률(C/A)
2015	260.2	152.5	58.6	156.5	60.1
2016	229.6	137.1	59.7	140.5	61.2
2017	233.8	135.7	58.0	139.2	59.6
2018	238.6	138.9	58.2	149.3	62.6
2019	252.6	155.9	61.7	166.2	65.8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조기집행 제도는 상·하반기 간의 경기편차를 완화하고 각 부처의 예산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이에 2019회계연도 정부의 높은 조기집행 성과는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조기집행 제도의 도입 취지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사항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최근 조기집행 목표의 초과달성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정부는 이러한 목표 초과달성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매년 상반기 집행률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5~2017회계연도 3년간 정부는 상반기 집행률 목표치를 약 1.5~1.6%p 정도만 초과달성하였으나 2018~2019회계연도에는 4%p 이상을 초과달성하여 그 폭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5~2019년 중앙부처 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상반기 집행목표(A)		상반기 집행실적(B)		초과달성분(B-A)	
	금액	집행률	금액	집행률	금액	집행률
2015	152.5	58.6	156.5	60.1	4.0	1.5
2016	137.1	59.7	140.5	61.2	3.4	1.5
2017	135.7	58.0	139.2	59.6	3.5	1.6
2018	138.9	58.2	149.3	62.6	10.4	4.4
2019	155.9	61.7	166.2	65.8	10.3	4.1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정부가 조기집행 목표를 소폭 초과달성하는 것은 목표 미달성의 위험을 방지하고 그 달성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2018~2019회계연도와 같이 큰 폭의 목표 초과달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다음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① 조기집행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을 당겨쓰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상반기 경기대응 기능이 확대되는 대신 하반기 경기대응 기능을 일부 제약할 수 있다. 정부는 연초 상·하반기 경기 전망 등을 토대로 연중 경기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한다. 이에 당초 전망 이상으로 상반기 경기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조기집행 목표를 크게 초과달성하는 것은 오히려 상·하반기 경기 간에 격차를 발생시켜 의도치 않게 경기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② 또한 세입여건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조기집행은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 또는 한국은행 일시차입 규모를 확대시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는 매월 재정수입과 지출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초단기 국채인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하는데, 이러한 재정증권 발행 또는 일시차입 소요는 재정수입 실적이 저조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 2019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총수입 기준 △3.3조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등 세입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 및 일시차입 실적도 일반회계 기준 26조원으로서 2018회계연도 2조원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이를 위한 이자비용도 2,105억원으로서 2018회계연도 24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검토한 후 대상사업의 집행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의 구성을 일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회계연도 기준 중앙부처의 재정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규모는 252.6조원으로서 정부 총지출의 53.8% 수준이다.

[2019년 중앙부처 조기집행 목표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총지출(A)	조기집행 대상사업(B)	
			총지출 대비 비중(B/A)
예산	328.9	208.9	63.5
기금	140.7	43.7	31.1
합계	469.6	252.6	53.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이러한 조기집행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인건비(110목), 상환지출(510목), 전출금 등(610목), 예비비 및 기타(710목) 비목을 제외한 주요 사업비(200~490목) 비목 중,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원인행위 발생에 따라 집행’하거나 ‘경제 활성화와 무관’한 사업을 추가로 제외하고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기준은 조기집행 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확보하는 것임을 보여준다⁴⁾.

그러나 현행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구성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 우선 현행 조기집행 대상사업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인 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규모는 총 8.2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여는 모두 일정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가재정법」⁵⁾ 및 국가재정운용계획⁶⁾에 따라 의무지출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이러한 급여 사업이 전술한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제외기준 중 “원인행위 발생에 따라 집행”하는 사업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정부가 “원인행위 발생에 따라 집행”하는 사업을 조기집행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업의 집행에는 정부의 의지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에 정부는 조기집행 대상사업에 전술한 3개 급여를 포함하여 집행상 정부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의무지출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다음 조기집행 대상사업에는 각종 정책금융 사업을 위한 출자·출연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당 사업은 총 5개 단위사업⁷⁾ 1.2조원 규모이다.

4) 한편, 정부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어 관리가 필요한 사업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5)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 내역

6) 대한민국정부,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2019.9., p.29.

7) 정부가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중인 조기집행 대상사업 목록은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2019년 조기집행 대상사업 중 정책금융 목적 출자·출연사업 현황]

(단위: 억원)

부처	단위사업명	예산규모	출자·출연시기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관출연	1,540	1월
	모태조합출자(기금)	2,400	3월
금융위원회	기업은행 출자	2,000	2월
	산업은행 출자	5,000	3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900	4월
합계		11,840	-

자료: 대한민국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주요관리대상사업집행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러한 정책금융 목적의 출자·출연사업은 통상 사전준비에 착수하기 위해 피출자·피출연기관의 자본금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연초에 출자·출연금이 전액 교부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실제 2019년 포함된 5개 단위사업들의 경우에도 정부는 모두 4월 이전에 예산을 전액 교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구조상 연초 전액 집행이 예상되는 이러한 정책금융 목적의 출자·출연사업 또한 조기집행 대상사업에 포함시킬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마지막으로 현행 조기집행 대상사업에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조기집행 대상사업에는 총 5가지 유형의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가 포함⁸⁾되어 있으며, 총 4개 유형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포함⁹⁾되어 있다.

다만, 이 중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입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인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이 매년 12월초이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도 차년도 상반기 중 교부액이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된다는 점에서 이를 조기집행 목표에 포함시켜 관리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 그 밖에 재난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는 제외되어 있다.

9) 그 밖에 3종의 특별교부금은 제외되어 있다.

정부가 조기집행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그 집행을 관리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재정의 경기대응 효과를 보다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상사업에 관리의 실익이 부족한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집행관리 노력이 재정의 경기대응 효과로 연결되는 것을 일부 제약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상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상사업 구성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권기금¹⁾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2019년 복권기금 수입은 총 5조 8,082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00.0%인 5조 8,070억원을 수납받고 12억원이 미수납되었다. 지출은 계획현액 5조 9,052억원 중 98.3%인 5조 8,07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414억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복권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복권기금	5,637,328	5,905,150	5,905,150	5,808,197	5,806,989	1,208	0	100.0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19회계연도 복권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복권기금	5,637,328	5,905,150	5,905,150	5,806,989	0	41,395	98.3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윤여문 예산분석관(doors82@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복권기금

5-1.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환류 강화 필요

가. 현 황

정부는 매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예산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기준 총 96개의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2020년 5월 공개하였다.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는 집행, 성과, 환류의 3개 부문 총 9개 평가지표(합산 100점 만점)와 가점·감점 부문 3개 평가지표(각 ± 2 점 범위)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이에 따른 2019년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2019년 복권기금사업 평가결과 요약]

(단위: 개)

구분	법정배분사업 ¹⁾	기타공익사업 ²⁾	합계
매우 우수 (90점 이상)	3	-	3
우수 (89~80점)	25	9	34
보통 (79~70점)	33	19	52
미흡 (69~60점)	5	2	7
매우 미흡 (60점 미만)	-	-	-
합계	66	30	96

주: 1) 법정배분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는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를 법정배분 비율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10개 주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업을 '법정배분사업'이라 명명

2) 기타공익사업: 법정배분사업에 배분되고 남은 수익금으로 실시하는 나머지 사업을 편의상 '기타공익사업'으로 명명

자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19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 2020.4.

나. 분석의견

성과평가보고서에서 밝힌 원칙과 달리 ‘미흡’, ‘매우 미흡’인 사업이 차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편성시 오히려 증액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평가·환류체계에 대한 집행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북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는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을 소개하며 매년 “‘미흡’,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 조정 또는 북권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²⁾. 그러나 2016~2018회계연도 기타공익사업³⁾에 대한 평가결과가 각각 2018~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시⁴⁾ 반영된 결과를 살펴보면, ‘미흡’ 및 ‘매우 미흡’ 등급 사업 전체의 1/3 이상(17개 중 6개 사업)이 오히려 증액 편성되고 있다.

우선 2016회계연도 평가의 경우 기타공익사업 중 총 8개 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 중 당초부터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던 1개 사업⁵⁾을 제외한 7개 사업의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계획액 편성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3개 사업(42.9%)에서 증액이 발생하였다.

[2016년 ‘미흡’ 및 ‘매우 미흡’ 평가사업의 계획액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평가결과	2017년도 계획	2018년도 계획안	
			전년 대비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미흡	12,308	14,108	+1,800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미흡	4,168	5,024	+856
재난적의료비 지원	미흡	17,751	35,662	+17,911
성매매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	미흡	5,479	5,330	△14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미흡	1,860	1,525	△335
입양아동 가족지원	미흡	19,382	18,800	△58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미흡	6,867	6,524	△343

자료: 기획재정부 북권위원회, 「2016년도 북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 2017.4.

- 2) 기획재정부 북권위원회, 「2019년도 북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 2020.5., p.34. 등
- 3) 법정배분사업은 성격상 기금 계획액 조정에 경직성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조정가능성이 높은 기타공익사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 4)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일정상 성과평가결과는 차차년도 이후의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시부터 반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도 평가결과는 2018년 발표되기 때문에 2019년도 계획안 편성시부터 반영될 수 있다.
- 5) ‘소외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다음 2017회계연도 평가의 경우 기타공익사업 중 총 6개 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 중 당초부터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던 2개 사업⁶⁾을 제외한 4개 사업의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계획액 편성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1개 사업(25%)에서 증액이 발생하였다.

[2017년 ‘미흡’ 및 ‘매우 미흡’ 평가사업의 계획액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평가결과	2018년도 계획	2019년도 계획안	
				전년 대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미흡	5,024	5,531	+507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미흡	6,524	6,198	△326
보호요양원 건립	미흡	12,577	12,128	△449
입양아동 가족지원	미흡	18,800	17,860	△940

자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17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 2018.4.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평가의 경우 기타공익사업 중 7개 사업이 ‘미흡’, 1개 사업이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 중 당초부터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던 2개 사업⁷⁾을 제외한 6개 사업의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계획액 편성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2개 사업(33.3%)에서 증액이 발생하였다.

[2018년 ‘미흡’ 및 ‘매우 미흡’ 평가사업의 계획액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평가결과	2019년도 계획	2020년도 계획안	
				전년 대비
입양아동가족지원	미흡	17,860	18,042	+182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미흡	21,163	22,793	+1,63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지원사업	미흡	4,674	4,100	△574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미흡	6,198	5,888	△310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지원	미흡	4,108	3,081	△1,02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매우 미흡	35,662	32,096	△3,566

자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18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 2019.4.

6)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및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사업

7) ‘청소년 창업비전센터 건립’ 및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사업

정부가 매년 성과평가보고서를 통해 밝힌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기금 계획액 반영 외에는 ‘성과평가 강평회 실시’, ‘3년 연속 미흡사업 심층평가 실시’ 정도만 제시되고 있어 사실상 ‘차년도 계획액 감액’이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통제 수단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평가보고서에서 밝힌 원칙과 달리 평가결과 ‘미흡’ 이하인 사업의 상당수가 증액 편성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평가·환류체계에 대한 집행기관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술한 것처럼 2019년 성과평가시에도 2개의 ‘미흡’ 등급 사업이 발생⁸⁾ 하였으며 동 성과평가보고서도 ‘미흡’ 이하 등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액 조정 또는 복권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편성시부터는 가급적 이러한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⁹⁾.

8)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9) 이에 대하여 정부는 복권기금사업은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인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성과평가 결과 미흡이하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는 예산감액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예산감액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개선계획서 또는 제도개선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특히 3년 연속 미흡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제도를 '19년도부터 도입하였다는 입장이다.

5-2. 복권기금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법정기한 준수 필요

가. 현 황

복권기금은 계정성 기금으로서 주로 보조·출연, 타 기금 전출 등의 교부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특히 보조사업¹⁰⁾은 2019년 세부사업 기준 총 11개가 편성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보조사업의 2018년도 계획현액 5,170억 800만원 중 99.2%인 5,130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9억 5,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복권기금 보조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전용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당초	수정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지방자치단체지원	119,148	119,148	-	-	119,148	119,148	100.0	-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지원	105,713	105,713	-	-	105,713	105,517	99.8	-	196
아동복지시설 치료· 재활지원 사업	1,218	1,218	-	-	1,218	1,218	100.0	-	-
재난적의료비지원	35,662	35,662	-	-	35,662	32,100	90.0	-	3,562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106,931	106,931	-	-	106,931	106,735	98.3	-	196
입양아동 가족지원	17,860	17,860	-	-	17,860	17,860	100.0	-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198	6,198	-	-	6,198	6,198	100.0	-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542	542	-	-	542	542	100.0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47,080	47,080	-	-	47,080	47,080	100.0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26,806	26,806	-	-	26,806	26,806	100.0	-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	49,850	49,850	-	-	49,850	49,850	100.0	-	-
합계	517,008	517,008	-	-	517,008	513,054	99.2	-	3,954

자료: 기획재정부

10) 코드: 복권기금 69-691

나. 분석의견

정부는 복권기금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¹¹⁾은 보조사업이 완료·폐지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3개월, 민간보조사업은 2개월 내에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도 복권기금 보조사업은 실적보고서 제출 법정기한을 미준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우선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내역사업별·피보조기관별 총 96건의 실적보고서 중 22건(22.9%)이 제출기한(차년도 3월 말일)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중 11건(11.5%)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복권기금 자치단체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사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피보조기관	제출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제주	'20.05.11.
	중소기업육성 저금리융자지원	제주	
	고용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제주	
	생활환경취약지구개선일자리사업	제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지원사업	제주	
	장애인교통약자맞춤형안전차량전달구축사업	제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지원	제주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울산	'20.04.06.
		충북	'20.04.21.
		충남	'20.05.01.
		경남	'20.04.24.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서울	'20.05.07.
		울산	'20.04.10.
		경기	'20.04.14.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피보조기관	제출일
		강원	'20.05.08.
		충북	'20.05.10.
		충남	'20.05.08.
		전북	'20.05.08.
		경북	'20.05.11.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	충남	'20.05.01.
		전남	'20.04.21.
		경남	'20.04.24.

주: 굵은 글씨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제출기한을 미준수한 사례
자료: 기획재정부

다음 민간보조사업은 총 5건의 실적보고서 중 3건(60.0%)이 제출기한(차년도 2월 말일)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중 2건(40.0%)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복권기금 민간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사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피보조기관	제출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3.0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보훈대상자 의료복지서비스 선진화 지원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03.26.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등	경북모금회 등	'19.03.27.

주: 굵은 글씨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제출기한을 미준수한 사례
자료: 기획재정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정부의 보조금 잔액 및 이자정산, 차년도 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 등에 활용되고 국회도 이를 제출받아 결산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¹²⁾한다는 점에서, 제출기한 준수는 단순한 회계절차 이행의 의미를 넘어 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건전성 및 국회 재정통제의 효과성 문제와 연결된다. 특히 복권기금은 매년 4월 별도의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보조사업실적

12) 「국가재정법」

제54조(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가 5월 이후에 제출되고 있는 상황은 성과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피보조기관을 독려하는 등 복권기금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현 황

국고업무관리 사업¹⁾은 공공기관 결산 지원, 출자·배당정책 지원 및 정부 소유 주식 관리, 수입인지제도 및 국가계약제도 운영 등 기획재정부 국고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2019회계연도 국고업무관리의 예산현액 총 4억 3,300만원 중 81.8%인 3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800만원을 이월, 1,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고업무관리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국고업무관리	448	448	-	△15	433	354	81.8	68	11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정부결산서 제출 및 국회심사 기한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결산서 국회제출 일정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기관결산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²⁾에 따라 3월 31일까지

윤여문 예산분석관(doors82@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233-302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결산서의 제출) ②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각각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한다.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

정부에서 확정된 후 5월 10일 ~ 7월 31일 감사원 회계검사를 거쳐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이는 통상 3월 말 ~ 4월 초 국무회의에서 초안이 확정된 후 4월 10 ~ 5월 20일 감사원 회계검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 결산서에 비해 다소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

[정부결산 및 공공기관결산 기간 비교]

구분	결산서 확정	감사원 제출	감사원 회신	국회제출
정부결산(A)	통상 3월말~4월초	4. 10.	5. 20.	5. 31.
공공기관결산(B)	3. 31.	5. 10.	7. 31.	8. 20.
차이(B-A)	유사	30일	72일	81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결산내역이 정부에서 확정되는 시점은 3월말로서 정부 결산과 유사하다. 그러나 공공기관결산서의 감사원 제출 기한은 정부결산 대비 30일, 감사원 회신 기한은 72일 늦게 규정되어 있어 주로 감사원 회계검사 단계에서 공공 기관 결산일정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등 정부 측은 ① 매년 4~5월은 정부결산 회계검사와 기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공공기관결산의 감사원 제출기한은 5월 초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② 충실한 회계검사를 위해서 회신기한도 현재와 같이 여유 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결산과 공공기관결산 회계검사 업무를 각각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결산서의 감사원 제출기한을 현재와 같이 5월 초로 유지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회계검사는 전체 기관이 아니라 정부 지분을 50%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결산서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과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인 기관(2019년 기준 27개)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이며 정부결산과 달리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기초로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 회신기한을 현행과 같이 정부결산대비 72일이나 지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법」³⁾은 국회 결산심사를 정기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완료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⁴⁾을 집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결산서의 국회 제출기한이 국회 결산심사 기한으로부터 불과 11일 전인 8월 20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공공기관결산서의 감사원 회신 기한 및 국회제출 기한 등을 재검토하여 공공기관결산 총 기간을 일부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⁵⁾.

3)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4)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 p.5.에 따르면 2019년 추경예산 기준 정부 총지출 475.4조원의 16.2%인 77.0조원

5) 또한 필요시 감사원 회계검사를 거치지 않는 정부 지분율 50% 미만 공공기관의 결산서는 먼저 제출하고 나머지 공공기관 결산서만 감사원 회계검사를 거친 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 현황

201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상환¹⁾ 계획액은 당초 18조 1,525억 200만원이었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9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변경을 통해 국고채 원금상환(조기상환)을 1조원 확대하고 국고채 이자상환은 1조원을 감액하여 17조 1,816억 7,700만원으로 수정되었다. 이중 16조 6,980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4,836억 4,9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19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상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고채 이자상환	18,152,502	17,181,677	-	17,181,677	16,698,028	-	483,649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은 금리 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일정부분 원충규모가 필요하나,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계획규모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발행된 국고채 물량(567.0조원, '18년말 기준)의 이자상환은 대부분 표면금리의 계획대로 집행되기 때문에 국고채 이자상환지출에서 불용되는 부분은 신규 국고채발행(조기상환 포함 '19년 101.7조원)의 계획과 실제의 이자상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2019년도 신규 국채발행금리(=공자기금 예탁금리)를 3.5%로 가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2.7%보다 0.8%p 높았다. 국회에서 금리는 조정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 신규 국고채 낙찰금리의 평균 이자율은 1.68%으로 나타났다.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1071-780

[연도별 신규 국고채 금리 현황]

(단위: %)

	정부안	국회조정	국회 확정	조달평균금리
2012	5.0	-0.5	4.5	3.23
2013	4.8	-0.8	4.0	3.14
2014	4.8	-0.8	4.0	3.02
2015	4.5	-1.0	3.5	2.15
2016	3.5	-0.7	2.8	1.63
2017	2.3	0	2.3	2.10
2018	2.7	0	2.7	2.43
2019	3.5	0	3.5	1.68
2020	2.6	0	2.6	

자료: 기획재정부

금리 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정 부분 완충(buffer)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연례적으로 계획안을 과대 편성한 후 예산 심의시 삭감 후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신규 국고채 이자상환의 적정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19년 예산과 결산의 차이는 1조 4,544억 7,400만원에 달하나 이 중 1조원은 국고채 조기상환에 필요한 추가적 비용(고금리→저금리 발행에 따른 추가적 보전 비용)을 위해 국고채 원금상환(9862-981)으로 자체변경을 통해 사용되었다. 2020년에도 이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4,800억원을 전출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700억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연도별 국고채 이자상환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안(A)	예산(B)	예산수정(C)	결산(D)	차이(A-B)	차이(B-D)	집행률(D/B)	집행률(D/C)
2014	20,485,775	19,024,501	18,039,723	18,020,449	1,461,274	1,004,052	94.7	99.9
2015	20,740,728	18,872,854	18,952,850	18,255,731	1,867,874	617,123	96.7	96.3
2016	20,516,150	18,832,653	18,832,653	17,961,410	1,683,497	871,243	95.4	95.4
2017	18,832,819	18,141,598	18,141,598	17,197,102	691,221	944,496	94.8	94.8
2018	18,522,454	17,822,466	17,822,466	17,305,696	699,988	516,770	97.1	97.1
2019	19,052,735	18,152,502	17,181,677	16,698,028	900,233	1,454,474	92.0	97.2
2020	19,855,575	18,905,575			950,000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III

개별 사업 분석

1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가. 현 황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¹⁾은 국가경제의 대내외 여건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여 경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중장기전략위원회 및 작업반 등 전략 수립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미래전략 포럼 등의 학술회의와 미래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대국민 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10억 1,000만원 중 8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911	911	99	-	1,010	857	84.8	-	153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첫째, 중장기 경제전략의 형식 및 수립주기·기간 등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전략수립의 지연 및 계획변경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국가경제·재정 운용에 관한 중장기적 시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12년 신설되었다. 당시 정부는 대통령령인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을 제정한 후 중장기 경제전략 수립 주체로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기획재정부에 국단위 부서인 장기전략국을 신설하였다.

윤여문 예산분석관(doors82@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1132-401

이후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4기까지 총 4회 구성되었는데, 1~3기 위원회는 각각 중장기 경제전략을 1건씩 수립하고 해산되었고 현재는 4기 위원회가 2018년 1월 구성되어 제4차 중장기 경제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9년차에 접어들며 4번째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경제전략의 기본적인 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매 회차 전략별로 그 형식과 수립주기·기간 등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우선 형식 면에서 1~2차 전략은 경제·재정 현안 전반을 다루는 ‘종합전략’의 형태로 수립된 반면 3차 전략은 추후 수립할 종합전략에 대한 ‘선행연구’ 형태로 추진되었다. 수립주기의 경우 2차 전략은 직전 전략 수립 후 3년만에 수립된 반면 3차 전략은 1년 3개월만에 수립되었고, 4차 전략은 2020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완료된다고 해도 3년 4개월만에 수립되는 등 특별한 원칙이 없는 상황이다.

[제1~4차 중장기 경제전략 현황]

구분	명칭	수립기간	수립주기	형식
1차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2012.04. ~ 2012.12. (8개월)	-	(종합전략) 성장잠재력·인구구조·기후 변화·사회갈등·통일 등 현안 전반 포괄
2차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2014.10. ~ 2015.12. (1년 2개월)	3년	(종합전략) 성장잠재력·인구구조·기후 변화·사회갈등·과학기술발전·대외 불확실성 등 현안 전반 포괄
3차	중장기전략 주요과제	2016.08. ~ 2017.03. (7개월)	1년 3개월	(선행연구) 추후 수립할 ‘종합전략’에 선행하여 4차산업혁명·인구구조·사회 자본 등 3개 분야를 연구
4차	미정	2018.01. ~ (2년 7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상	수립중

주: 1. 수립기간: 시작일은 중장기전략위원회 구성일을, 종료일은 보고서 발표일을 기준으로 설정

2. 수립주기: 직전 전략 발표일과 현 전략 발표일 간의 간격을 의미

자료: 각 차수별 중장기 경제전략 보고서 또는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현재 수립중인 4차 전략의 경우 수립기간이 당초 계획대비 1년 이상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제4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계획 및 중장기전략 추진방향을 논의한 2018년 3월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동 위원회는 향후 “경제·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할 예정”²⁾이며 연내(2018년 내)에 전략 수립을 완료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한 2019년 5월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결과 보도자료³⁾를 통해 기존 계획을 일부 변경하며 수립기간을 2018년 중에서 2019년 중으로 연기하였다. 이후 정부는 수립기간을 다시 2020년 이후로 재연장하였으며, 2020년 7월 현재까지 정확한 수립기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기 경제전략은 적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수립된다면 국가 경제·재정정책의 시계를 미래로 확장시킴으로써 체계성·종합성·효과성 측면에서 정책의 질을 한 단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이다. 이에 정부는 동 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장기 경제전략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전략의 형식, 수립주기·기간 등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그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2018.3.9., p.2.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결과」, 2019.5.13., p.1.

둘째, 정부는 4차 중장기 경제전략의 확정·발표에 앞서 정부 내 다른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것처럼 4차 중장기 경제전략은 당초 2018년 중 수립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일정이 2차례 지연되어 2020년 이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19년 8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수립에 착수하여 2020년 8월 이후 발표할 계획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두 계획이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는 상황이 되었다.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는 2045년까지 약 25년을 시계로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친 전략을 제언하는 국가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4차 중장기 경제전략도 ‘생산성 혁신’과 ‘삶의 질 제고’ 등 경제·사회 분야를 중장기적 시계에서 폭넓게 아우르고 있음을 고려하면, 4차 중장기 경제전략은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와 밀접한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가급적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지식협력단지 운영¹⁾은 서울 홍릉 연구 단지 내에 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세종시 이전 후 해당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상을 보여주는 학습·전시관인 지식협력단지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2019회계연도 지식협력단지 운영의 예산현액 총 123억 9,400만원 중 68.8%인 85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억 2,000만원을 이월하고 16억 4,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지식협력단지 운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		전년도	이전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지식협력단지 운영	9,360	9,360	3,034	-	12,394	8,527	68.8	2,220	1,640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정부는 지식협력단지의 방문 및 교육 등 활용실적을 제고하고, 여유 공간의 추가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식협력단지는 2015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舊한국개발연구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2018년 10월 31일 정식 개관하였다. 그러나 개관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식협력단지의 방문 및 교육 등 활용실적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우선 방문실적은 개관 후 15개월간(2018년 11월 ~ 2020년 1월)²⁾ 월평균 835명(행사관련방문 757명, 일반방문 78명) 수준이다. 특히 교육 등 행사 관련 방문객 외에 자발적인 방문실적에 해당하는 일반방문객은 월평균 78명으로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윤여문 예산분석관(doors82@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3239-301

2) 2020년 2월 이후는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되어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지식협력단지 방문실적]

(단위: 명)

구분	총방문객수	행사관련방문객수	
		행사관련방문객수	일반방문객수
'18. 11월	336	336	-
'18. 12월	262	245	17
'19. 1월	800	707	93
'19. 2월	541	240	301
'19. 3월	989	536	453
'19. 4월	1,027	1,022	5
'19. 5월	1,020	1,018	2
'19. 6월	1,484	1,454	30
'19. 7월	924	918	6
'19. 8월	1,351	1,315	36
'19. 9월	1,048	1,036	12
'19. 10월	833	816	17
'19. 11월	875	821	54
'19. 12월	455	348	107
'20. 1월	588	547	41
누계	12,533	11,359	1,174
월평균	835	757	78

자료: 기획재정부

교육실적 또한 개관 후 15개월간(2018년 11월 ~ 2020년 1월) 월평균 8건(총 188명, 교육건당 24명) 수준이다.

[지식협력단지 교육실적]

(단위: 명)

구분	교육건수	총 교육인원	
		총 교육인원	건당 교육인원
'18. 11월	2	39	20
'18. 12월	6	114	19
'19. 1월	5	111	22
'19. 2월	8	114	14
'19. 3월	2	38	19
'19. 4월	9	255	28
'19. 5월	18	408	23
'19. 6월	9	212	24
'19. 7월	14	325	23
'19. 8월	5	111	22
'19. 9월	8	163	20
'19. 10월	12	309	26
'19. 11월	11	228	21
'19. 12월	4	94	24
'20. 1월	13	293	23
누계	126	2,814	22
월평균	8	188	24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지식협력단지의 교육시설은 총 8개실에 251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정부는 2019년도 교육운영비 예산으로 12억 6,000만원³⁾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육실적은 시설규모 및 예산규모 대비 저조한 측면이 있다.

[지식협력단지 교육시설 규모]

구분	수용 가능 인원(명)
무궁화홀	98
재스민실	30
연꽃실	33
장미실	35
수련실	15
튤립실	15
달리아실	10
카라실	15
계	251

자료: 기획재정부

이 사업은 토지면적 29,766㎡, 건물연면적 12,415㎡에 달하는 기존 한국개발연구원 건물 전체를 교육·전시시설로만 조성했으나, 시설규모 대비 방문·교육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우선 외국경제관료·기업인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단체방문단을 중점 유치하여 방문·교육실적을 최대한 제고하는 한편, 여유공간은 교육·회의·공연 등을 위하여 일반에 개방하는 등 추가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세부내역은 프로그램개발 2억 5,000만원, 학습자료 발간 1억 7,500만원, 교육운영 6억 8,000만원, 문화행사 6,400만원, 학술자료비 9,100만원 등이다.

가. 현 황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¹⁾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운영위원회·기관장워크숍 실시,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개최, 각종 시스템·홈페이지 운영 등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제상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의 예산현액 총 62억 2,100만원 중 88.5%인 55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7,700만원을 이월하고 2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		전년도	이전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5,803	5,803	418	-	6,221	5,506	88.5	477	238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정부는 알리오플러스(ALIO Plus)홈페이지의 활용실적을 보다 제고하거나 알리오(ALIO)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관련 정보를 일반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리오(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 One), 잡알리오(Job ALIO), 알리오플러스(ALIO Plus) 등 3종류의 홈페이지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알리오는 공공기관 공시정보 공개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2006년 구축되었고, 잡알리오는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 구축된 것이다.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 시설·행사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근인 2019년 알리오플러스를 구축 완료한 후 운영을 개시하였다.

윤여문 예산분석관(doors82@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531-300

[공공기관 정보공개 홈페이지 현황]

구분	목적	개통연도	주요 기능(메뉴)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2006	- 공공기관별 경영공시 내용 통합 제공 - 공공기관 통계 제공 - 기타 공공기관 관련 법령·정책자료 제공
잡알리오	공공기관 채용정보 제공	2011	- 공공기관별 채용정보(공지사항) 통합 제공 -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소개·접수 등
알리오 플러스	공공기관 사업·행사·시설 등 정보	2019	- 공공기관 대여시설 정보 제공 - 공공기관 행사정보 제공 - 공공기관 설문조사참여·민원접수 기능 제공

자료: 각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의 알리오플러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알리오와 별도 운영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

첫째, 알리오플러스는 당초 제시한 계획과 달리 국민과 공공기관 간 쌍방향 소통 기능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단순 정보제공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알리오와 기능상 차별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알리오플러스를 구상하면서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국민과 공공기관 간 쌍방향 소통을 통한 국민 참여의 場 마련”²⁾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는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 등에서 알리오플러스와 기존 알리오의 기능상 중복가능성 문제가 제기될 때 동 시스템은 단순 정보제공 기능을 넘어 국민과의 소통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을 차별화 논리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2019년 실제 시스템이 개통된 후,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국민과의 소통 기능을 살펴보면, ① 설문조사·정책투표 게시기능, ② 對공공기관 민원제기 기능 정도 수준이다. 이 중 설문조사·정책투표는 2019년 4월 개통 후 2020년 5월말 현재까지 13개월 동안 80여건 정도가 수행된 상황이다. 또한 對공공기관 민원제기 기능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 이미 제공 중인 기능이기 때문에 알리오플러스는 국민신문고로 연결하는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나라장터, “공공기관 혁신포털시스템 구축” 용역 제안요청서, 2018.8. 참고로, 알리오플러스로 명명되기 이전 동 시스템의 명칭은 “공공기관 혁신포털시스템”이었다.

또한 동 홈페이지의 실질적인 기능 중 하나는 공공기관별 대여시설·행사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것인데, 이 또한 시설예약·행사참가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정보검색 및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로의 이동 기능만 제공할 뿐이다. 이러한 단순 정보제공은 기존 알리오의 경영정보 제공과 성질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시스템상 소요되는 정보량도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알리오플러스의 접속실적을 고려할 때에도 별도 홈페이지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알리오와 통합 운영시 기존 홈페이지의 인지도로 인해 접속 실적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월 구축 이후 2020년 4월까지 13개월 동안 알리오플러스의 접속실적은 월평균 21,290건(일평균 699건)으로서 알리오(691,523건)의 3.1%, 잡알리오(171,941건)의 12.4% 수준이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홈페이지 접속실적]

(단위: 건)

구분		알리오	잡알리오	알리오플러스
2019년	4월	624,328	137,933	13,125
	5월	617,143	164,835	12,147
	6월	665,388	160,418	11,469
	7월	744,412	167,593	11,203
	8월	715,471	159,574	10,707
	9월	695,833	163,262	10,297
	10월	721,177	175,114	13,296
	11월	702,763	170,601	45,476
	12월	686,298	188,732	39,031
2020년	1월	699,065	213,294	32,746
	2월	700,636	175,803	30,015
	3월	693,803	180,153	31,844
	4월	723,479	177,923	15,409
합계		8,989,796	2,235,235	276,765
월평균		691,523	171,941	21,290

자료: 기획재정부

이 중 2019년 초·중반의 접속실적 부진은 홈페이지 구축 초기로서 對국민 인지도가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구축된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알리오 등에 비해 접속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은 정부 홍보 노력 부족이나 수요예측 실패 등 정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에 정부는 알리오플러스의 유지관리에 연간 억원 단위의 비용이 소요³⁾됨을 고려하여, 홍보 노력 강화와 함께 당분간 알리오플러스 접속실적 추이를 지켜본 후 뚜렷한 실적 제고가 없는 경우에는 알리오와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⁴⁾.

3) 알리오플러스는 알리오, 잡알리오 등과 함께 ‘공공업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으로 발주되는데, 동 용역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17~2018년에는 5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19~2021년에는 알리오플러스 추가 등을 전제로 7억 9,9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4)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알리오플러스 홈페이지의 정보검색기능을 강화하여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 내 다양한 정보를 one-stop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따른 알리오플러스 홈페이지 활용실적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 현 황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재구축(정보화)¹⁾은 노후화된 기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을 대체하는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2019회계연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재구축(정보화)의 예산현액 총 180억 4,200만원 중 39.2%인 70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1억 4,600만원을 이월하고 28억 2,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재구축(정보화)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		전년도	이전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재구축(정보화)	18,042	18,042	-	±285	18,042	7,073	39.2	8,146	2,823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이 사업은 전술한 것처럼 예산현액의 60.8%인 109억 6,900만원을 미집행하였다²⁾. 이에 대하여 정부는 이 사업의 추진주체인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이하 “추진단”)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의 직제 협의가 늦어진 것을 주요한 지연 사유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용역을 발주하면서 관련 지침에 따른 작업장소 관련 예산을 미계상하여, 중도에 용역을 수정 공고함에 따라 사업이 추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윤여문 예산분석관(doors82@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531-300

2)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 기본경비로 전용한 미집행 예산분을 포함하면 예산현액의 62.4%인 112억 5,400만원을 미집행한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용역은 이 사업의 핵심 용역이나 추진단 설립 지연 및 사전 준비 미흡으로 2019년 9월 23일에야 발주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가 관련 지침을 미반영하여 10월 16일 수정 공고를 하였고, 이후 단독응찰로 유찰이 되어 11월 13일 재공고를 한 끝에 11월 26일에야 낙찰자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지연 과정 중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은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관련 지침 미반영에 따른 수정 공고는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큰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고시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 제2항³⁾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 등에 계상하거나 작업장소 등을 직접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그 부담주체가 발주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안요청서상 “제안사는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차후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수정 공고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추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재구축(정보화) 사업은 단순히 노후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을 넘어 각종 신규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예·결산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동 시스템 내에서 관계자가 각종 통계를 자체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재정분석시스템의 기능 개선도 계획중이라는 점에서 국회 등 관련 기관의 관심도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재구축(정보화) 사업의 수행에 있어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 기초적인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가. 현황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2018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23억 5,500만 달러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4%이다.

ODA는 전달경로에 따라 크게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구분되고, 양자원조는 다시 협력대상국의 상환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원조(증여)와 유상원조(양허성 차관)으로 나뉘어진다. 무상원조는 협력대상국에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기술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력대상국은 공여받는 ODA 지원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유상원조는 민간자금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양허성 공공차관 및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현금 또는 현물 이전을 의미하며 협력대상국은 공여받은 ODA 지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ODA의 총괄 및 조정기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며,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각각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주관기관이다.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총 43개 기관(지자체 11개 포함, 2018년 기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시행기관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주요사업인 대개도국 차관사업¹⁾은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 제공을 통해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개도국과의 호혜적 경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대개도국 차관사업의 준비, 실시, 사후관리 등 사업진행 단계별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사업진행컨설팅 사업²⁾과 경험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사업³⁾ 등이 있다.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대외경제협력기금 3331-301~309

2) 코드: 대외경제협력기금 3376-302

3) 코드: 대외경제협력기금 3337-641

2019년도 대개도국차관 계획액은 1조 1,412억 3,100만원이며 이 중 1조 517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894억 5,300만원을 불용하였다.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은 지역별로 5개 세부사업(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태평양)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태평양차관(77.7%)과 중남미차관(86.8%) 등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개도국차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A)						
대개도국차관	1,141,231	1,141,231		1,141,231	1,051,778		89,453	92.2
아시아차관	354,532	289,705		289,705	283,299		6,406	97.8
아프리카차관	283,382	244,290		244,290	233,778		10,512	95.7
중동-CIS차관	76,476	110,307		110,307	90,404		19,903	82.0
중남미차관	64,573	46,581		46,581	40,420		6,161	86.8
태평양차관	129,740	104,359		104,359	81,127		23,232	77.7
민간·국제 기구협력차관	232,528	345,989		345,989	322,750		23,239	93.3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사업진행컨설팅 계획액은 당초 120억원이었으나 155억 4,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48억 3,800만원을 더해 계획현액 203억 7,800만원 중 146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51억 7,2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 5억 5,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년도 경험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계획액 16억원 중 1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3,600만원을 이월, 3억 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년 대개도국차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A)						
사업진행컨설팅	12,000	15,540	4,838	20,378	14,650	5,172	557	94.3
경험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1,600	1,600	-	1,600	161	1,136	303	10.1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첫째, 대개도국차관 사업은 수원국의 사정 등으로 집행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진행컨설팅 사업을 통해 수원국 중심의 차관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시행 지연, 장애요인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개도국차관 사업 중 2018년도 집행이 부진했던 아시아 차관사업이 2019년에는 현장중심 사업관리 및 집행 촉진의 노력으로 집행이 크게 개선('18년 63.2% → '19년 97.8%)되었다. 하지만 태평양차관(77.7%) 및 중남미차관(86.8%) 등은 수원국의 행정절차 지연 등의 결과로 여전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집행 촉진을 위해 집행관리와 구매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현지사무소의 사업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사업별 지연사유 해소를 위해 현지사무소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국의 사정에 따라 집행률이 저하되어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설계부터 수원국 정부와 협의하여 수원국 정부가 사업추진의사가 높고 개발효과가 높아 신속하게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개도국차관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인 사업진행컨설팅 사업에서 수원국 정부와 사업발굴 협의를 하여 수원국의 개발계획 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지연, 다양한 장애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발굴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2016~2019년 사업진행컨설팅을 통해 발굴한 41개 사업(3조 5,242억원)을 승인한 바 있으며, 이는 2016~2019년 차관사업 승인 규모 7조 4,753억원의 47.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기업의 수원국 진출 등 지원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주요 목적이거나 집행을 제고를 위해 수원국 중심의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불확실성을 낮추고 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협증진자금 사업컨설팅사업의 집행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과 사업진행컨설팅은 대개도국 차관사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차관사업의 투입 재원 및 운용체계(근

거법, 소관부처 등) 등 측면에서 상이하여 2018년 과목구조 개편을 통해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운영 중이다. 차관사업의 투입재원 측면에서 경험증진자금 사업진행 컨설팅은 수출입은행이 취급하는 경험증진자금⁴⁾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사업진행컨설팅 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운용체계 측면에서 「수출입은행법」에 기초한 경험증진자금은 수출입은행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의 소관인 반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근거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소관부처에 따라 각 차관사업에 수반되는 컨설팅 서비스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수원국의 금융조건 합의안 번복, 무리한 요구, 수원국 정부의 F/S 지원 신청 지연 등으로 2019년 경험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사업이 지연되거나 전면 재검토되어 집행률이 저조(10.1%)하나, 이월된 11억 3,612만원은 2020년 중 전액 집행될 예정이며, 수원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이불용을 최소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국의 의사결정 번복, 무리한 요구, 행정절차 지연, 정권교체 등 예상치 못한 수원국의 사정으로 사업의 집행부진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경험증진자금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이나 대부분의 차관사업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따라서 소관부서는 경험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사업의 집행을 제고를 위해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컨설팅사업에서 사업 발굴단계에서부터 무상원조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ODA는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유상원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 건립 및 의료기자재 구매나 학교 건립은 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약품 지원, 의료인력 양성, 교육시스템 지원 등 무상원조사업과 연계되어 지원되어야 개도국의 지원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사업컨설팅사업의 사업 발굴단계에서부터 무상

4) 원조환경 변화, 재원의 한계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재원을 활용한 차관지원을 목적으로 도입한 수출입은행의 低양허성 대출 상품

사업 시행기관 및 정부부처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통합적 ODA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F/S 협업, 정책자문, 기술협력 및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유무상 ODA 연계를 통해 차관사업을 발굴한 바 있다.

따라서 사업건설사업에서 차관사업 발굴시 관련 부처 및 무상 ODA 수행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연계 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4~2019년 유무상 ODA 사업 연계 실적]

연계 년도	국가	사업명	연계내용	연계기관
2014	방글라데시	반달주리 상수도 개발사업	F/S 수행	KOICA
2014	이집트	철도 전자연동시스템 구축사업	시스템 컨설팅	기획재정부 (KSP)
2015	베트남	벤째성 종합병원 건립사업	F/S 보완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5	필리핀	광일만 교량 건설사업	F/S 수행	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
2016	니카라과	마나과 우회도로 건설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국토해양부
2018	스리랑카	중등교육 ICT 허브 구축사업	F/S 수행	기획재정부 (KSP)
2018	파키스탄	우정공공서비스 현대화사업	약식 F/S 수행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8	튀니지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한국국토정보공사
2018	튀니지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정책자문	기획재정부 (KSP)
2018	미얀마	한미안산산업단지 주변 인프라 구축사업	정책자문	기획재정부 (KSP)
2018	케냐	간선버스 5번 전용도로 건설사업	정책자문	기획재정부 (KSP)
2018	케냐	나이로비 지능형교통망 구축 및 교차로 개선사업	정책자문	기획재정부 (KSP)
2019	탄자니아	도도마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F/S 수행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	스리랑카	의료기자재 섹터개발차관	F/S 수행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9	케냐	나이로비 지능형교통망 구축 및 교차로 개선사업(2차)	정책자문	기획재정부 (KSP)
2019	필리핀	해상교통안전 개선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KOICA

자료: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지원 사업의 설치목적 달성 위한 사업 관리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171



국세청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778억 4,300만원이며, 5조 7,771억 3,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8.3%인 1조 580억 7,000만원을 수납하고 4조 2,800억 4,2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4,390억 1,9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924,936	924,936	924,936	5,723,495	1,004,434	4,280,042	439,019	17.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2,907	52,907	52,907	53,636	53,636	-	-	100
합계	977,843	977,843	977,843	5,777,131	1,058,070	4,280,042	439,019	18.3

자료: 국세청

2019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7,451억 400만원이며, 이 중 98.1%인 1조 7,121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8억 5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744,917	1,744,917	1,745,104	1,712,157	142	32,805	98.1

자료: 국세청

나.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국세청의 자산은 22조 1,567억 5,400만원, 부채는 17조 7,268억 8,000만원으로 순자산은 4조 4,298억 7,4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1,353억 3,400만원(0.6%) 증가하였는데 유동자산 16조 7,643억 5,800만원, 일반유형자산 2조 5,522억 4,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미수국세 1,150억 5,900만원, 미수제재금 수익 463억 7,600만원 감소 등에 따른 유동자산 1,597억 7800만원 감소와 장기미수국세 3,256억 8,900만원 증가에 따른 기타비유동자산 3,249억 6,0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1,855억 100만원(1.1%) 증가하였는데 유동부채 16조 2,397억 5,500만원, 장기충당부채 1조 4,314억 4,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미지급국세 7,767억 6,000만원 감소, 기타 선수수익 3,206억 2,7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5,038억 4,900만원 감소, 소송충당부채 6,697억 5,0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증가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국세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2,156,754	22,021,420	135,334	0.6
Ⅰ. 유동자산	16,764,358	16,924,136	△159,778	△0.9
Ⅱ. 일반유형자산	2,552,240	2,599,318	△47,078	△1.8
Ⅲ. 무형자산	72,135	54,905	17,230	31.4
Ⅳ. 기타비유동자산	2,768,021	2,443,061	324,960	13.3
부 채	17,726,880	17,541,379	185,501	1.1
Ⅰ. 유동부채	16,239,755	16,743,604	△503,849	△3.0
Ⅱ. 장기차입부채	55,679	36,079	19,600	54.3
Ⅲ. 장기충당부채	1,431,446	761,696	669,750	87.9
순 자 산	4,429,874	4,480,041	△50,167	△1.1
Ⅰ. 기본순자산	1,843,247	1,843,247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709,705	1,681,897	27,808	1.7
Ⅲ. 순자산 조정	876,921	954,897	△77,976	△8.2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조 5,500억 2,5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2,450억 9,700만원, 관리운영비 1조 6,726억 1,800만원, 비배분비용 7,493억 6,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8억 2,200만원, 비배분수익 1,162억 3,7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498억 7,300만원(10.9%) 증가한 2조 5,500억 2,5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402억 1,300만원 증가에 따른 관리운영비 574억 2,000만원 증가와 대손상각비 2,005억 8,000만원 증가에 따른 비배분비용 2,015억 2,700만원 증가 및 자산처분이익 878억 5,900만원 증가에 따른 비배분수익 249억 4,8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 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탈세대응강화(1,478억 900만원), 채납·징수관리 프로그램(559억 6,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조 2,075억 2,600만원과 복리후생비 2,086억 3,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7,482억 9,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국세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44,275	228,401	15,874	7.0
가. 프로그램 총원가	245,097	229,268	15,829	6.9
나. 프로그램 수익	822	867	△45	△5.2
II. 관리운영비	1,672,618	1,615,198	57,420	3.6
III. 비배분비용	749,369	547,842	201,527	36.8
IV. 비배분수익	116,237	91,289	24,948	27.3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550,025	2,300,152	249,873	10.9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2,550,025	2,300,152	249,873	10.9

자료: 국세청

국세청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4조 4,800억 4,1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4조 4,298억 7,400만원으로 기초 대비 501억 6,700만원(△1.1%) 감소하였다.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기초 대비 2,498억 7,300만원 증가하였고,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173억 5,500만원,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1,043억 4,4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3조 6,366억 3,8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조 588억 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 재평가이익 △779억 7,5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국세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4,480,041	4,158,636	321,405	7.7
II. 재정운영결과	2,550,025	2,300,152	249,873	10.9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577,833	2,595,188	△17,355	△0.7
IV. 조정항목	△77,975	26,369	△104,344	△395.7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4,429,874	4,480,041	△50,167	△1.1

자료: 국세청

국세청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②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은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범적 운영임을 감안하여 25억원 감액(50억원→25억원)되었고,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은 근로·자녀장려세제와 현금영수증제도 홍보 예산의 타 사업 이관으로 8억 800만원 감액(30억 3,100만원→22억 2,3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사업**, ②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다.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사업은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기존에 다른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관련 예산의 이관으로 12억 1,600만원 증액(82억 3,600만원 → 94억 5,200만원)되었고,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은 현금영수증제도 홍보 예산의 이관으로 2억 1,000만원 증액(16억 8,400만원 → 18억 9,400만원)되었다.

2019년도 국세청은 중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 전자세정을 구현하고자 정보화 예산을 증액하였고,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다.

2019년도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에 대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종합 청렴도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국세청은 국세상담센터 및 홈택스 상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월별 상담 수요에 맞게 임시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특정 기간에 국세상담 응답률이 지나치게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신청안내문 및 지급통지서의 모바일 발송을 확대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국세청의 청렴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는 매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한다. 2019년도에 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청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 등 총 6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을 조직인원이 2,000명 이상인 경우 ‘중앙행정기관 I 유형’, 2,000명 미만인 경우 ‘중앙행정기관 II 유형’으로 구분하여 청렴도를 조사하는데, 국세청은 2,00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이므로 ‘중앙행정기관 I 유형’(23개)으로 구분되어 평가된다.

청렴도를 평가하는 요소는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부패사건 발생현황으로 구성되는데, 외부청렴도(0.601)·내부청렴도(0.25)·정책고객평가(0.149)의 각 요소별로 측정된 점수를 가중합산하고 부패사건 발생현황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 청렴도를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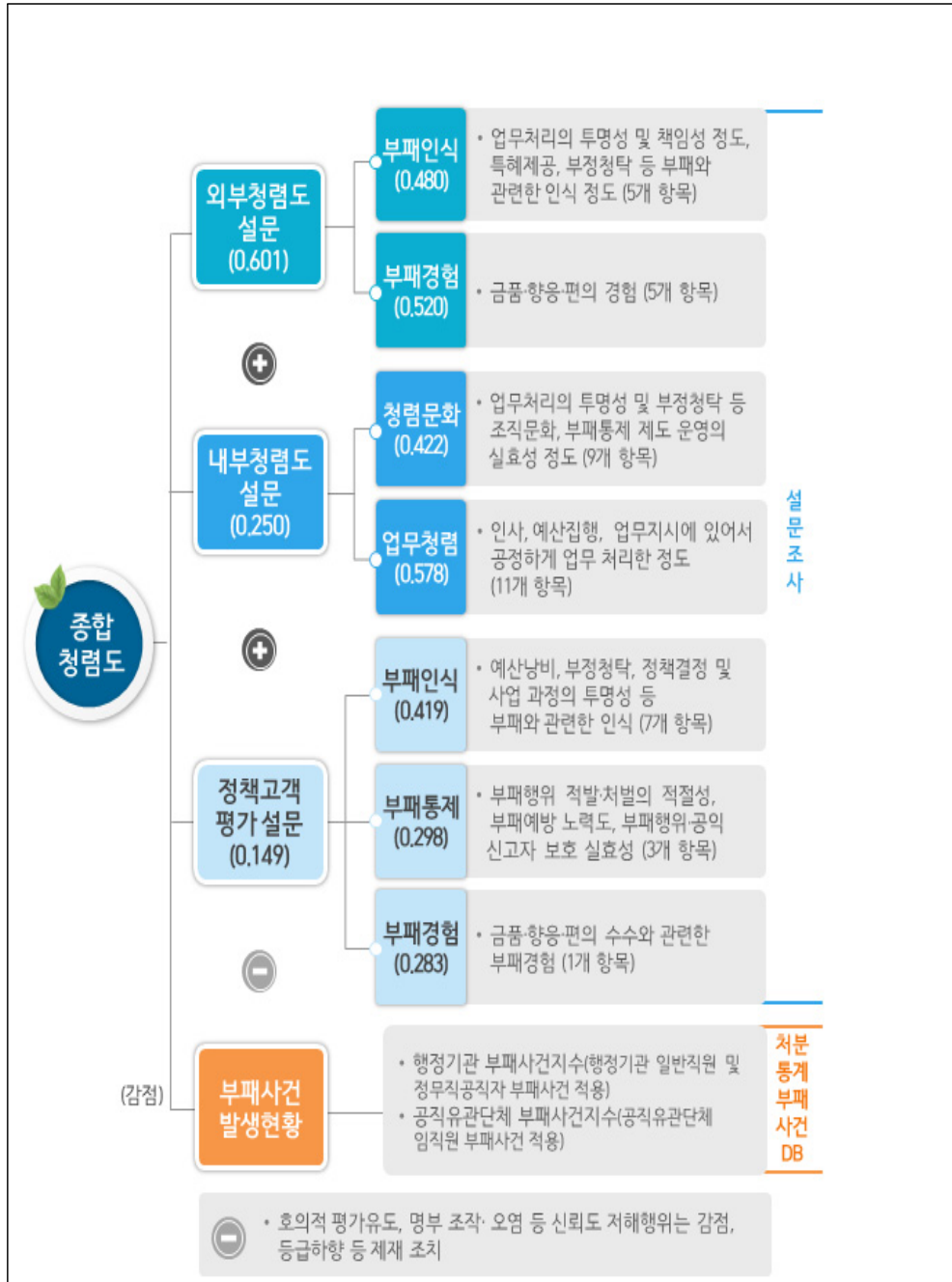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보면, 외부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의 특정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을 조사하고, 내부청렴도는 현재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직문화의 청렴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조사하며, 정책고객평가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및 정책관련자(지역주민·학부모) 등 포함)를 대상으로 부패인식·부패통제 정도 및 부패경험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788-4623)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2) 지역주민은 광역자치단체, 학부모는 교육청의 청렴도를 평가

[2019년 청렴도 측정모형]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가. 현황

2019년도 국세청의 청렴도 제고와 관련된 청렴교육 및 공직윤리 교육 등의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에서 청렴콘텐츠 공모전과 감사관하라인 리플릿 등의 내용으로 각각 3,200만원, 2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19회계연도 국세청의 청렴도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 기본경비	8,560	8,560	8,983	8,933	99.4	0	50
청렴콘텐츠 공모전	32	32	32	32	100.0	0	0
감사관하라인 리플릿	2	2	2	2	100.0	0	0

자료: 국세청

국세청이 속해있는 중앙행정기관 I 유형 기관(23개)의 2019년도 종합청렴도 결과를 보면, 통계청이 가장 우수한 수준인 1등급으로 나타났고 국세청은 가장 낮은 수준인 5등급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I 유형 기관의 종합청렴도 결과]

구분	종합청렴도(23)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1등급	통계청	통계청	국세청 통계청	관세청 농촌진흥청
2등급	국가보훈처 농촌진흥청 환경부	국방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환경부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행정안전부
3등급	검찰청,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방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청,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처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구분	종합청렴도(23)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법무부,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4등급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법무부 외교부 해양경찰청
5등급	국세청	국세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국방부,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나. 분석의견

국세청은 종합청렴도가 낮은 수준이고 내부청렴도는 1등급으로 최상위인데 반하여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각각 5등급으로 최하위를 보이고 있는 등 조직 내부에서 인식하는 청렴도와 국민들이 인식하는 청렴도 사이에 괴리가 있으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에 대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종합청렴도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 국세청의 청렴도 수준을 각 요소별로 살펴보면, 외부청렴도는 3년 연속 5등급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고, 내부청렴도는 3년간 1등급으로 최상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정책고객평가는 2017년 2등급에서 2019년 5등급으로 악화되었다. 그리고 종합청렴도는 2017년 4등급, 2018년 5등급, 2019년 5등급으로서, 매년 동일한 중앙행정기관 유형(중앙행정기관 I 유형)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세청의 종합청렴도 구성요소별 등급 현황]

구 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2017	4등급	5등급	1등급	2등급
2018	5등급	5등급	1등급	4등급
2019	5등급	5등급	1등급	5등급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이와 같은 국세청 청렴도 조사결과의 시사점은 종합청렴도가 동일 유형(중앙행정기관 I 유형)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청렴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가 최하위 수준인데 반해 내부청렴도는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나 양자간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청렴동아리 활성화, 찾아가는 청렴교육,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및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청렴 업무협약 등 청렴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내부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아직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국민의 재산권 제한가능성이 있는 세정업무의 특성상 국세청 업무관련 국민의 만족도가 타 기관에 비해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조세징수 업무의 특성상 국민으로부터 공정성을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청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³⁾

또한, 기관 조직 내부구성원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국민이 외부에서 하는 평가보다 지나치게 높는데, 이러한 요소가 국세청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도 수준을 인식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국세청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정책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내부구성원에 대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에 대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종합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국세청과 유사한 성격인 사정(査定)기관인 검찰청·경찰청·관세청의 경우에도 3등급 정도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세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국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동 기관은 과세대상과 신고절차 등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의 개별·구체적 상담수요를 국세청이 직접 해결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침해행정으로부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세청 산하기관이다.

국세상담센터의 연혁을 살펴보면, 국세상담센터는 2001년 3월 국세청 납세지원국 소속 콜센터로 출발하여 같은 해 8월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로 정식 발족되었고, 그 후 ‘국세종합상담센터’(2003년 5월), ‘국세청고객만족센터’(2008년 7월)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5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신서귀포 혁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2016년 3월에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2016년 5월에는 ‘국세상담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세상담센터의 업무는 세법상담과 홈택스상담으로 구분되는데, 세법상담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증여세법 등 국세와 관련한 상담업무이고, 홈택스상담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체의 소속 상담사들이 현금영수증·전자신고납부·연말정산이용 등 기술적인 이용방법에 대한 상담업무이다.¹⁾

국세상담센터의 조직은 2019년말 기준 센터장 1명, 행정업무 담당 업무지원팀 11명, IT 등 기술업무 담당 고객만족팀 6명, 세법상담 중 전화상담 3개 팀(91명)과 인터넷상담 3개 팀(33명), 홈택스상담 4개 팀 15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²⁾

1) 상담방식은 전환연결을 통한 상담과 인터넷 상담 2가지이다.

2) 홈택스상담팀은 서울특별시 여의도동의 사무실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조직은 제주특별자치도 신서귀포 혁신도시에 소재한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법상담 및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가. 현황

2019년 국세청 예산에 국세상담업무를 위해 편성된 사업은 4개로서, 국세상담센터 인건비,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총액인건비),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홈택스 상담센터 운영 사업이다.

국세상담센터 인건비³⁾ 사업은 87억 4,100만원이 편성되어 86억 5,200만원(99.0%)이 집행되고, 8,900만원이 불용되었다.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총액인건비)⁴⁾ 사업은 8억 9,600만원이 편성되어 8억 500만원(89.8%)이 집행되고, 9,100만원이 불용되었다.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사업⁵⁾은 6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6억 2,300만원(99.8%)이 집행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다. 홈택스 상담센터 운영⁶⁾ 사업은 63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63억 6,100만원(99.9%)이 집행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국세청의 상담센터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세상담센터 인건비	8,741	8,741	8,741	8,652	99.0	0	89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896	896	896	805	89.8	0	91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624	624	624	623	99.8	0	1
홈택스 상담센터 운영	6,365	6,365	6,365	6,361	99.9	0	4

자료: 국세청

상담채널은 전화와 인터넷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최근 3년간 상담채널별로 비중을 보면, 세법상담의 경우는 전화상담이 87.8%, 인터넷 상담이 12.2%를 차지하고 있고, 홈택스 상담의 경우는 전화상담이 97.7%, 인터넷 상담이 2.3%를 차지하고 있어 전화상담이 주 상담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3) 코드: 일반회계 7202-100

4) 코드: 일반회계 7218-200

5) 코드: 일반회계 7218-250

6) 코드: 일반회계 7231-300

[최근 3년간 국세청 상담센터의 상담채널별 실적]

(단위: 천건)

구 분	2017		2018		2019		합 계	
	세법	홈택스	세법	홈택스	세법	홈택스	세법	홈택스
전화	1,646	2,648	1,725	2,681	1,689	2,758	5,060 (87.8%)	8,087 (97.7%)
인터넷	199	44	229	58	272	88	700 (12.2%)	190 (2.3%)
합계	1,845	2,692	1,954	2,739	1,961	2,846	5,760 (100%)	8,277 (100%)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국세청은 국세상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세상담센터 및 홈택스 상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월별 상담 수요에 맞게 임시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특정 기간에 국세상담 응답률이 지나치게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국세상담센터의 평균 전화상담 응답률을 살펴보면, 세법상담은 62.1%, 홈택스상담은 72.8%로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콜센터의 응답률이 84.6%인 것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각 부처별 상담콜센터 응답률 현황]

(단위: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평균
국세청 세법상담	61.6	63.4	61.1	62.1
국세청 홈택스상담	75.8	70.2	72.8	72.8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94.6	79.6	79.6	84.6

주: 응답률은 상담사 연결 신청을 한 콜 중 상담사와 연결이 이루어진 콜의 비율

자료: 국세청, 고용노동부

또한 연중 월별로 응답률은 살펴보면, 세법상담의 경우는 1월, 9월, 12월의 응답률이 각각 59.6%, 59.0%, 45.8%로 평균 응답률 62.1%에 비해 저조하고, 홈택스 상담의 경우는 1월, 2월, 5월, 7월의 응답률이 각각 60.7%, 65.6%, 62.4%, 65.5%로 평균 응답률 72.8%에 비해 저조하게 나타났다.

[세법 전화상담 응답률]

(단위: 천건, %)

구 분	2017			2018			2019			합 계		
	인입	응답	응답률	인입	응답	응답률	인입	응답	응답률	인입	응답	응답률
1월	266	176	66.2	312	193	61.9	317	164	51.7	895	533	59.6
2월	287	191	66.6	233	176	75.5	218	137	62.8	738	504	68.3
3월	220	141	64.1	231	146	63.2	203	135	66.5	654	422	64.5
4월	186	109	58.6	196	136	69.4	198	138	69.7	580	383	66.0
5월	431	239	55.5	388	264	68.0	407	266	65.4	1,226	769	62.7
6월	184	113	61.4	164	120	73.2	193	121	62.7	541	354	65.4
7월	208	116	55.8	212	136	64.2	227	137	60.4	647	389	60.1
8월	183	113	61.7	177	114	64.4	187	119	63.6	547	346	63.3
9월	202	131	64.9	198	98	49.5	186	117	62.9	586	346	59.0
10월	142	97	68.3	174	111	63.8	167	123	73.7	483	331	68.5
11월	168	123	73.2	200	125	62.5	191	117	61.3	559	365	65.3
12월	193	97	50.3	234	106	45.3	268	115	42.9	695	318	45.8
합계	2,670	1,646	61.6	2,719	1,725	63.4	2,763	1,689	61.1	8,152	5,060	62.1

자료: 국세청

[홈택스 전화상담 응답률]

(단위: 천건, %)

구 분	2017			2018			2019			합 계		
	인입	응답	응답률	인입	응답	응답률	인입	응답	응답률	인입	응답	응답률
1월	707	487	68.9	824	414	50.2	772	496	64.2	2,303	1,397	60.7
2월	405	229	56.5	300	209	69.7	311	228	73.3	1,016	666	65.6
3월	235	197	83.8	253	194	76.7	225	192	85.3	713	583	81.8
4월	240	197	82.1	284	207	72.9	276	226	81.9	800	630	78.8
5월	260	185	71.2	325	194	59.7	347	203	58.5	932	582	62.4
6월	232	204	87.9	245	182	74.3	252	197	78.2	729	583	80.0
7월	290	197	67.9	358	225	62.8	360	238	66.1	1,008	660	65.5
8월	214	195	91.1	224	207	92.4	226	194	85.8	664	596	89.8
9월	231	209	90.5	207	179	86.5	208	182	87.5	646	570	88.2
10월	187	155	82.9	240	216	90	230	197	85.7	657	568	86.5

(단위: 천건, %)

구 분	2017			2018			2019			합 계		
	인입	응답	응답 률	인입	응답	응답 률	인입	응답	응답 률	인입	응답	응답 률
11월	228	191	83.8	253	224	88.5	254	192	75.6	735	607	82.6
12월	266	202	75.9	308	230	74.7	329	213	64.7	903	645	71.4
합계	3,495	2,648	75.8	3,821	2,681	70.2	3,790	2,758	72.8	11,106	8,087	72.8

자료: 국세청

이와 같이 전화상담 응답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국세청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상담인력으로 증가하는 상담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홈텍스 전화상담의 경우 평상시 상담수요는 월 25만건이나, 연말정산 등 신고기간(1~2월: 연말정산, 부가세, 5월: 종합소득세, 장려금, 7월: 부가세)에는 상담수요가 최대 월 82만건까지 폭증하여 해당 월에 낮은 응답률(상담률)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상담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에 임시상담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담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3년간 국세청 상담센터 임시인력 운용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 계	329	329	329	
연말정산 세법(12.16~3.15)	40	40	40	3개월
연말정산 간소화(12.16~3.15)	224	224	224	3개월 분산운영
종합소득세 (4.16~5.31)	40	40	40	1.5개월
근로·자녀장려금(4.25~5.31)	25	25	25	1.2개월

자료: 국세청

이처럼 상담센터의 전화응답률이 저조하게 되면, 국민의 상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고 국세 신고 및 납부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추가적인 국세행정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상담인력을 확충하여 국세 상담수요를 충족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임시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상담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에 응답률이 지나치게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과태료¹⁾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조세관련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금으로서, 2019년 과태료는 3,260억 2,000만원이 징수결정 되어 920억 8,800만원(28.2%)이 수납되었고, 1,142억 6,100만원이 불납결손 처리 되었다.

[2019회계연도 과태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B/A)
	본예산	추경						
과태료	12,389	12,389	12,389	326,020	92,088	119,671	114,261	28.2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첫째, 과태료 중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수납률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체납 징수업무 조직을 강화하고 과세기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과태료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과태료 수납률은 2016년 29.7%에서 2017년 46.9% 증가했다가 2018년 35.3%, 2019년 28.2%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태료 수납률]

(단위: 백만원, %)

연도	징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2015년	145,147	64,596	44.5
2016년	279,040	82,839	29.7
2017년	198,429	92,968	46.9
2018년	241,444	85,341	35.3
2019년	326,020	92,088	28.2

자료: 국세청

1) 코드: 일반회계 56-563

과태료 수납률 저하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과태료 징수 결정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현금영수증발급의무위반²⁾ 과태료의 수납률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발급 의무위반 과태료 수납률]

(단위: 백만원, %)

연도	현금영수증발급 의무위반		
	징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2015년	134,083	56,194	41.9
2016년	259,611	69,529	26.8
2017년	180,248	79,438	44.1
2018년	206,174	67,618	32.8
2019년	293,298	75,591	25.8

자료: 국세청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징수결정액은 징수가능성이 낮은 전년도 미수납액을 포함하고 있어 매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는 대부분이 세무조사³⁾에 의해 국세와 함께 부과되는데 국세와 동시에 체납⁴⁾되는 경우가 많아 수납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매년 수납액은 700억~800억원 수준으로 일정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과 실효성 담보하기 위한 행정제재 수단으로서 과태료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해 징수업무 조직을 강화하고, 과세기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과태료 수납률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舊)조세범처벌법 제15조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 유흥주점 등 음식, 숙박업 등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3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고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

3) 현금영수증 관련 과태료 중 세무조사 관련 고지금액 비율(%): (‘17) 96.4 → (‘18) 96.2 → (‘19) 98.2

4) ’20.5월 현재 현금영수증 관련 과태료 체납자 620명 중 국세체납자가 545명(87.9%)임

둘째, 국세청은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가산세로 전환되는 규모를 과다 산정하여 2019년 과태료 예산을 과소하게 편성하였으므로, 세법개정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2019년 과태료 예산 편성시 최근 5년('13~'17년) 징수실적 평균액에 같은 기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예상 수납액을 산정하고, 세법이 개정⁵⁾되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함에 따른 감소효과를 반영하여 123억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2019년 과태료 예산 산출근거]

- 감소요인 반영 전 예상 수납액 : 884억 9,600만원(1)
 $(85,819+98,244+64,596+82,839+92,968)/5 \times 1.0212^* = 88,496$ 백만원
- 세법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전액 감소요인 반영: 761억 600만원(2)
 $: 88,496 \times 86.0\%^{1)} = 76,106$ 백만원
- 2019년 과태료 예산: (1)-(2)= 123억 2,900만원

주: 최근 5년 과태료 수납액 중 현금영수증발급 의무 위반 과태료 평균 비율
 자료: 국세청

그러나 2019년 과태료 수납실적은 920억 8,800만원으로, 예산의 743.3%가 수납되었다. 이는 국세청이 2019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가산세로 이전됨에 따라 해당 과태료를 전부(100%)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해당 과태료가 가산세로 이전되는 금액은 과태료 수납예산분의 2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 개정의 효과를 과다 반영하여 세입예산과 수납액의 차이가 커지게 되면, 「국가재정법」 제21조 제3항⁶⁾에서 세입예산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한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세법개정시 법 개정으로 인한 수입 변동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과 수납실적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5) (구)조세범처벌법 15조,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
 -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면서 부과액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하향

6) 「국가재정법」
 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③ **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가. 현황

국세징수활동지원¹⁾ 사업은 국세청 직원의 국세 부과·징수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부과·징수 지원, 부과·징수 자료수집비, 조사활동지원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국세징수활동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은 1,257억 9,600만원으로 이 중 1,256억 2,8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6,8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국세징수활동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아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부과·징수 지원	58,702	58,702	-	58,702	58,688	99.9	-	14
부과·징수 자료수집비	46,643	46,643	-	46,643	46,618	99.0	-	25
조사활동지원	19,091	19,091	1,360	20,451	20,322	99.4	-	129
합 계	124,436	124,436	1,360	125,796	125,628			168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2019년에는 국세청이 조세범칙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한 건수 중 실제 무혐의로 결정된 건수의 비율이 지난 4년간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무혐의 결정 건수 비율의 증가는 납세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세범칙 혐의 선정역량을 강화하여 무혐의 비중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세징수활동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4가지로 구분되는데, 밀알정보 수집실적·조세범칙처분율·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인원, 과세전 적법성 검증비율이다. 이 4가지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보면, 밀알정보 수집실적은 108.9%,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인원은 99.9%, 과세전 적법성 검증비율은 105.3%의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조세범칙처분율은 84.2%로 저조한 달성도를 보이고 있다.

1) 코드: 일반회계 2131(단위사업)

[2019회계연도 국세징수활동지원 사업 성과지표 달성도 현황]

구 분	밀알정보 수집실적	신용카드 위장기망점 적발인원	과세전 적법성 검증비율	조세범칙처분율
목표(A)	78,547건	2,287명	30.0%	90.3%
실적(B)	85,505건	2,284명	31.6%	76.0%
달성도 (B/A)	108.9%	99.9%	105.3%	84.2%

자료: 국세청

조세범칙 처분율이란 국세청이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발견하거나, 탈세제보·과세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건 중 최종적으로 고발·통고처분을 한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조세범칙 처분율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4년간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9년에는 76.0%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는 국세청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한 건 중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판정을 받는 건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최근 5년간 범칙조사건수 대비 고발·통고처분 건수의 비율]

(단위: 건,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범칙조사건수(A)	364	346	276	386	313
고발·통고처분 건수(B)	338	315	238	362	238
A-B/A	92.9	91.1	86.3	93.8	76.0

자료: 국세청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 시에 납세자 등이 직접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18.5월), 범칙조사심의위원 중 변호사 비율을 지속적으로 상향²⁾하여 과거보다 엄격하게 범칙혐의 유무를 심의함에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혐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심의위원 중 변호사 비중을 높여 조세

2) 외부위원 중 변호사 비율(%) : '18.10월 (44) → '19.5월 (50) → '20.6월 (54)

행정의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국세청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조세범칙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받는 건 중 무혐의로 처리되는 건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조사대상인 납세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조세범칙대상자 선정시 범칙대상 건으로 선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건이 최소화 되도록 조세범칙대상자 선정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¹⁾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 가구가 장려금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홍보·신청안내·지급통지 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현액 94억 5,200만원 중 93억 6,500만원이 집행되었고 8,7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아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9,452	9,452	-	9,452	9,365	99.1	-	87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2019년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신청안내문 및 지급통지서의 우편발송을 위해 54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2019년 납세고지서 발송 사업에서 5백만건의 모바일 발송을 통해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참고하여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신청안내문 및 지급통지서 역시 모바일 발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사업은 2019년부터 신규로 추진된 것으로 신청안내 도우미 인건비, 신청안내문 및 지급통지서 제작·발송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에는 신청안내문 6,837,324장, 지급통지서 6,884,741장을 발송하였고, 발송비용으로 각각 22억 2,600만원, 32억 1,900만원 등 총 54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다.

1) 코드: 일반회계 3135-300

[근로·자녀장려세제 신청안내문 및 결정통지서 발송 수량 및 집행액]

(단위: 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청 안내문	수량	2,557,269	2,801,767	3,238,937	3,300,586	6,837,324
	비용	706	773	983	1,002	2,226
결정 통지서	수량	2,859,627	2,633,472	3,029,981	3,082,678	6,884,741
	비용	1,146	1,189	1,364	1,394	3,219
비용 합계		1,852	1,962	2,347	2,396	5,445

주: 장려금 신청안내문 및 결정통지서 발송연도를 기준으로 발송 수량에 단가 및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국세청

그런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는 사업인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2019년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등 총 500만건을 모바일로 발송하여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한다면,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사업에서 신청안내문과 결정통지서 역시 일정부문을 모바일로 대체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2020년부터 50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안²⁾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 제2항 및 제100조의31 제1항³⁾에서는 장려금 결정통지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서면으로만 통지가 가능하므로, 모바일 통지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2) 2020년 신청안내문 발송현황(2020년 6월말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전체발송건	모바일 발송건	모바일 발송 비용
신청안내문	4,841,898	2,999,218	215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를 국세환급금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2. 법 제100조의8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이 절에 따라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는 각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서", "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 "자녀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로 본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을 위한 결정통지가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320억 3,300만원이며, 5,614억 8,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3.5%인 1,317억 8,900만원을 수납하고 4,244억 3,6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52억 6,0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9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32,033	132,033	132,033	561,485	131,789	424,436	5,260	23.5

자료: 관세청

2019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531억 3,300만원이며, 이 중 95.7%인 5,291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2,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4억 1,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51,334	551,334	553,133	529,199	524	23,410	95.7

자료: 관세청

나.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관세청의 자산은 3조 2,774억 8,900만원, 부채는 2조 3,443억 100만원으로 순자산은 9,331억 8,8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조 2,237억 500만원, 일반유형자산 1조 16억 7,300만원, 무형자산 438억 2,1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9,947 3,000만원(23.3%) 감소하였다. 이는 미수채권 등의 감소에 따른 유동자산 9,645억원 감소,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318억원 감소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2조 3,443억 100만원, 장기충당부채 923억 2,300만원, 장기차입부채 236억 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조 690억 4,600만원(31.3%) 감소하였다. 이는 장기충당부채가 유동부채가 9,708억원 감소하였고 장기충당부채가 925억원 감소한 것 등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관세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3,277,489	4,272,219	△994,730	△23.3
Ⅰ. 유동자산	2,223,705	3,188,177	△964,472	△30.3
Ⅱ. 투자자산	95	0	95	순증
Ⅲ. 일반유형자산	1,001,673	1,015,433	△13,760	△1.4
Ⅳ. 무형자산	43,821	61,859	△18,038	△29.2
Ⅴ. 기타비유동자산	8,195	6,750	1,445	21.4
부 채	2,344,301	3,413,347	△1,069,046	△31.3
Ⅰ. 유동부채	2,228,369	3,199,122	△970,753	△30.3
Ⅱ. 장기차입부채	23,609	29,398	△5,789	△19.7
Ⅲ. 장기충당부채	92,323	184,828	△92,505	△50.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933,188	858,871	74,317	8.7
Ⅰ. 기본순자산	691,124	691,124	0	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70,458	△144,568	74,110	51.3
Ⅲ. 순자산 조정	312,522	312,315	207	0.1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194억 4,7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504억 2,500만원, 관리운영비 4,592억 4,400만원, 비배분비용 120억 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2,022억 2,400만원이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5,784억 6,900만원(58.%) 감소한 4,194억원 4,700만원이며, 이는 대손상각비 감소 등에 따라 비배분비용이 전년도 대비 4,675억 6,5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정보화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817억 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051억 600만원과 경비 1,541억 3,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103억 7,500만원과 감가상각비 1억 9,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관세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50,425	140,957	9,468	6.7
가. 프로그램 총원가	150,425	140,957	9,468	6.7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
II. 관리운영비	459,244	443,905	15,339	3.5
III. 비배분비용	12,002	479,567	△467,565	△97.5
IV. 비배분수익	202,224	66,513	135,711	204.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19,447	997,916	△578,469	△58.0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419,447	997,916	△578,469	△58.0

자료: 관세청

관세청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8,588조 7,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9,331억 8,810만원으로 기초 대비 743억 1,600만원(8.7%)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4,936억원, 조정항목이 2억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4,194억원 발생하여 순자산 가산항목

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6,282억원과 국고이전 지출 등 재원의 이전 1,346억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관세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858,872	1,323,143	15,970	1.2
II. 재정부영결과	419,447	979,916	391,663	64.6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93,556	530,414	△90,795	△14.6
IV. 조정항목	207	3,230	2,216	218.5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933,188	858,871	△464,272	△35.1

자료: 관세청

관세청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등이 있다.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 불용률을 고려하여 132억 1,100만원이 감액(3,276억원→3,144억원)되었다¹⁾.

1) 기획재정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11.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관세청은 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 ②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로 국민안전 확보, ③ 일 잘하는 세관 구현을 위한 통관관리체계 혁신, ④ 관세 행정 소분야에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 정착, ⑤ 불법·부정 무역행위 엄단으로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 ⑥ 新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전략적 관세외교 전개 등을 2019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감시업무를 위하여 도입된 드론이 성능상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감시업무에 활용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2019년 11월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나, 일반 여행자들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다.

가.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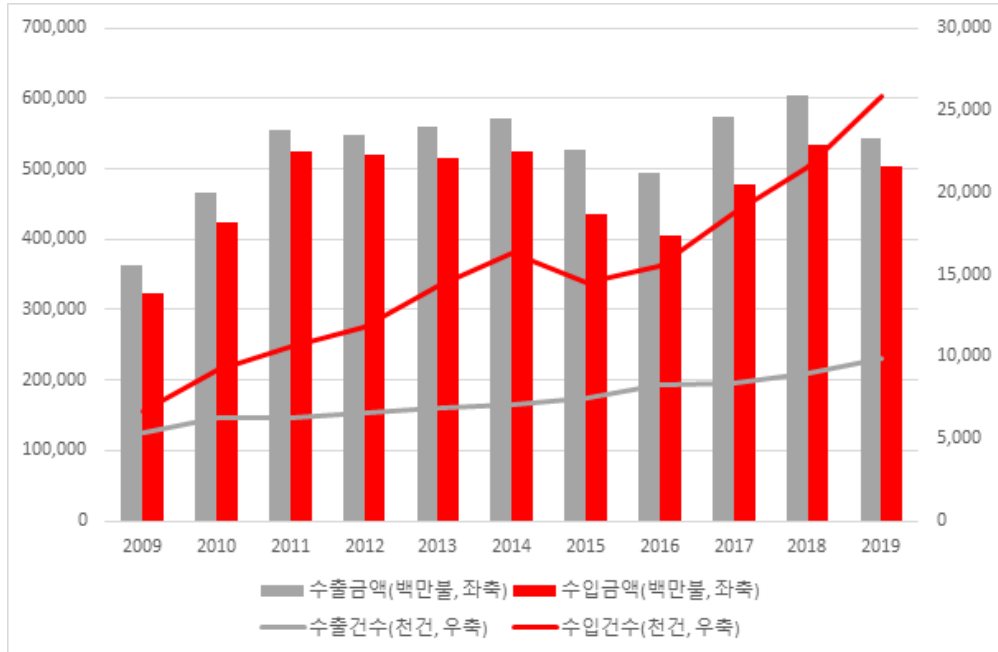
통관은 「관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관을 거쳐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절차로, 국제적인 물품의 이동은 통관을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을 의미하는 무역의존도가 2018년 기준 수출의존도 35.15%, 수입의존도 31.10%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서 관세국경에서 통관행정의 효율화와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물류경쟁력을 확보하여 주변 경쟁국과의 무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통관행정의 효율화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나, 최근 마약류 등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통관과정에서 밀수 단속 등 교역 안전 확보도 더욱 중요해지는 등 상충될 수 있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이 물류 통관 과정에서 요구되고 있다.

2009년 이후 2019년까지 통관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금액은 2009년 3,640억 달러에서 2019년 5,420억달러로 연평균 4.1% 증가하였고, 수입금액은 3,200억달러에서 2019년 5,300억달러로 연평균 4.5% 증가하였다. 한편 수출건수는 2009년 540만건에서 2019년 991만건으로 연평균 6.3% 증가하였고, 수입건수는 2009년 670만건에서 2019년 2,589만건으로 연평균 14.5% 증가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수출입금액의 증가율보다 수출입건수의 증가율이 높아, 수출 1건당 금액은 2009년 67,300달러에서 2019년 54,700달러로 수입 1건당 금액은 2009년 48,200달러에서 2019년 19,400달러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수출입건수가 증가한 것은 과거와 달리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외국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소위 “직구”가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건수는 2016년 1,737만건에서 2019년 4,299만건으로 147.5% 증가하였다.

이광근 예산분석관(kklee@assembly.go.kr, 788-4687)

[2009~2019년 수출입 관련 현황]



자료: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입 통관 현황]

(단위: 천건)

	2016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5월)
전체수입 ¹⁾	32,659	39,423	48,439	58,873	28,980
전자상거래수입	17,377	23,592	32,255	42,988	22,815
전자상거래 비중	53.2%	59.8%	66.6%	73.0%	78.7%

주: 1) 일반수입건수 + 특송화물·간이·목록통관 수입건수

자료: 관세청

한편 통관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는 수입화물처리시간은 200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2009년 2.92일에서 2019년 1.25일로 감소하였다.

[전자상거래 수입 통관 비중]

(단위: 일)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입화물처리시간	2.92	2.44	2.29	2.04	1.71	1.80	2.05	1.69	1.44	1.34	1.25

자료: 관세청

통관과정에서 안전성 확보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인 수입화물의 검사건수는 2019년 기준 27만 4,000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검사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나. 분석의견

첫째, 수출입물품 검사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통관 과정에서 위험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시에 세관에서 수출입 금지 물품의 반출·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다. 최근 수출입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검사건수는 이에 미치지 못해 검사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검사비율이 낮아지는 이유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 등을 활용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기업들에 세관검사를 면제하는 등 관세청이 통관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험군과 비위험군을 선별하여 검사하기 때문이기도 하나, 검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적절한 위험관리를 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불법·위해화물 적발 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특히 최근 밀수 단속건수가 2015년 3,545건에서 2019년 5,579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마약류의 국내 밀수 적발건이 급증하는 한편 국내 불법 폐기물 수출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야기된 점을 감안할 때, 통관 과정에서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015~2019년 밀수 단속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사범	2,174	12,442	2,185	15,859	2,721	59,036	3,395	43,014	4,087	11,117
지재권사범	192	4,653	177	3,323	155	1,486	175	5,217	273	6,609
대외무역사범	64	5,085	73	1,852	90	2,175	94	1,483	146	6,538
외환사범	1,245	47,141	728	41,127	379	40,041	601	30,478	365	34,461
마약사범	325	2,140	382	887	429	880	659	6,792	661	8,733
국민보건사범	0	0	0	0	0	0	26	239	47	316
합 계	4,000	71,461	3,545	63,048	3,774	103,618	4,950	87,223	5,579	67,774

자료: 관세청

따라서 관세청은 통관의 효율성¹⁾ 측면과 통관과정에서의 위험관리 양 측면을 고려하여 매년 적정 수출입 검사비율을 설정하고, 수출입 검사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1) 통관 과정에서 검사 강화로 통관이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물류비, 창고비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관리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통관에 있어서 특송화물 반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불법·위해물품 반입 및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수출건수가 2009년 540만건에서 2019년 991만건으로 연평균 6.3% 증가하고, 수입 건수는 2009년 670만건에서 2019년 2,589만건으로 연평균 14.5% 증가하는 등 관세청의 통관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입통관의 경우 국내수입자를 통한 일반무역 건수보다 국내소비자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접구매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수입물품은 전체 4,290만 4,000건 중 7,000건을 제외하고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통관되었다. 특송화물이란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254조의2²⁾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에 따라 통관에 있어서 특례가 인정되는 화물이다. 특송화물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건본품 중 가격이 150달러(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 특송물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³⁾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목록통관,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200달러)~2,000달러인 물품에 대하여 첨부서류없이 전자서류로 간이하게 신고하도록 한 간이수입, 물품가격이 2,000달러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수입으로 나뉜다. 2019년에는 목록통관이 2,554만건, 12억 9,200만달러, 간이수입이 33만건, 9,426만달러, 일반수입이 1,712만건,

2)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등

17억 5,700만달러의 규모를 차지하였다.

[2015~2019년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유형별 현황]

(단위: 천건, 천달러)

년도	구분	목록통관	간이수입	일반수입	전체
2016	건수	9,763	66	7,548	17,377
	금액	719,282	22,262	880,742	1,622,286
2017	건수	13,217	159	10,216	23,592
	금액	886,811	50,392	1,173,037	2,110,240
2018	건수	19,158	280	12,817	32,255
	금액	1,179,064	83,088	1,492,792	2,754,944
2019	건수	25,538	329	17,121	42,988
	금액	1,292,202	94,263	1,756,996	3,143,461
2020 (~5월)	건수	14,116	104	8,595	22,815
	금액	578,117	30,641	788,317	1,397,076

자료: 관세청

이 중 가장 간소화된 통관절차인 목록통관의 경우 그 건수가 2016년 976만건에서 2019년 2,554만건까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목록통관의 경우 실제 물품을 확인하지 않으면 신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과세가격 등 허위 신고에 따른 불법 통관 가능성이 높고, 관세 탈루뿐만 아니라 마약 등 수입금지물품의 밀수 통로로 활용되어 적발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관세청은 우수 특송업체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목록통관 비율 및 검사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특송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증가에 대응하여 담당 인력·조직을 보완·개편하는 등 소액·소량 물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송화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조사감시용 드론 도입 및 운용상 문제점

가. 현 황

감시장비 운영관리¹⁾는 세관이 보유한 감시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이고, 조사감시장비 현대화²⁾ 사업은 국민 생명과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물품 반입차단에 필요한 장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세청은 동 사업에 항만감시 및 밀수단속 등을 위한 드론 도입 및 운용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감시장비 운영관리 사업에 드론 통신료 및 보험료 등에 5,200만원,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에 드론 및 부수장비 도입 등을 위한 예산 9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회계연도 드론 도입 및 운영 관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 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감시장비 운영관리	13,574	13,574	-	-	13,574	13,008	-	566
드론 운용 관련	52	52	-	-	52	37	-	15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15,859	15,859	1,586	-	17,445	14,131	524	2,790
드론 도입 관련	910	910	-	-	910	730	-	180

주: 드론 관련 예산은 내역사업이 아닌 각목 편성내역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2017년 수립한 “관세청 미래발전전략”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활용한 감시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드론을 이용한 공항·항만 감시를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18년까지 총 6대의 드론³⁾을 도입하여 시범운영하

이광근 예산분석관(kklee@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332-301

2) 코드: 일반회계 1332-302

였으며, 그 결과 총 6건의 관세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관세청은 시범운용성과에 따라 2019년부터는 드론을 정식 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2019년 10대의 드론을 부산세관에, 2020년 총 4대의 드론을 인천세관에 도입하기로 계획하였다.⁴⁾ 관세청은 드론 운용을 위한 인력 양성을 위하여 2019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드론 운용의 이론 및 실기 등 총 60시간(3주)의 교육과정을 5회 위탁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30명의 관세청 직원이 교육과정을 수료, 28명이 드론 운용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관세청 드론 도입 관련 경과]

년도	내용
2017	- 관세청 미래발전전략에서 드론을 이용한 공항·항만 감시 추진 계획 - 드론 1대 도입
2018	- 드론 5대 도입 - 총 6대 드론 감시업무에 시범운용 : 6건의 관세법 위반행위 적발
2019	- 국산드론 10대 도입(부산) - 드론 운용 인력 양성 과정(외부위탁) 실시(30명 수료, 28명 자격증 취득)
2020	- 국산드론 4대 도입 예정(인천)

자료: 관세청

2019년 관세청 업무계획에 따르면 관세청은 드론을 항만감시, 범죄현장 증거채집, 화물반출입 위협요인 감시 등 통관 업무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CCTV, 감시정 등 기존 감시장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 분석의견

감시업무를 위하여 도입된 드론이 성능상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감시업무에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2019년 당초 10대의 드론기체, 고성능카메라(열화상(EO/IR)카메라 5대, 야시경(Color Night Vision) 카메라 5대) 및 이를 운용하기 위한 통합관제시스템을 9월에 도입 완료하여 항만감시 및 범죄현장 증거채집 등 조사, 화물반출입 위협요인

3) 중국 DJI 사의 1대당 약 200만원 상당의 드론

4) 국토교통부, 「드론 혁신성장 성과점검 회의자료」, 2019.1.24.

감시 등 통관 업무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었다.

[2019년 관세청 드론장비 구입내역]

구분	구입내역
구성	① 통합관제시스템 1식 ② 드론 10대(ND-605C) ③ 카메라 10대 (EO/IR 5대, Color Night Vision 5대)
도입일	'19.12.26.
사업비	599백만원

자료: 관세청

2019.12.26. 도입된 10대의 드론은 부산세관에 배치되어 직원 대상으로 2020.2.9.까지 도입 기종에 대한 조종 교육을 진행하였고, 2020.2.10.부터는 실제 운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드론 조종기와 기체간 송수신 전달 오류로 전복되거나 부산항만 내의 전파간섭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성능 문제로 인하여 2020.4.10.부터 2020.6.26.까지 고장 발생에 따른 리콜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관세청이 보유한 10대의 드론은 도입 이후 2020년 6월 26일까지 월말까지 운용일수가 19일, 총 운용시간이 9시간 25분에 불과하고 드론을 이용한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없다.

관세청은 2019년 드론 도입을 통해 감시정 및 CCTV 등 기존 장비의 감시역량을 보완하여 육상(차량 등)·해상(감시정)·공상(드론)의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였고, 2019년 성과보고서에는 드론 10대 도입을 통해 이를 완료하였다⁵⁾고 작성하였다. 그러나 2020년 5월 현재 도입된 드론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통합감시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관세청은 2019년 37척의 감시정 중 노후도가 심한 4척을 감축하였고, 이에 따른 감시공백을 드론 등 신규 도입하는 장비로 보완하는 것을 계획하였다는 점⁶⁾을 감안하면 관세청의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장비 활용이 저조한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드론 도입이 지연되고 고장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⁷⁾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5) 관세청,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관세청)」 p.73

6) 2018년 국정감사 중 관세청장 답변 내용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에 따라 드론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선정되어 정부 및 공공기관은 국내 중소기업에서 제작한 드론만 구입할 수 있어, 경험이 부족한 업체⁸⁾가 계약업체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납품업체는 2019년 하반기부터 산업용 드론을 정부 등에 납품하기 시작한 기업으로, 관세청은 계약 과정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기업과 감시업무에 요구되는 드론의 성능사양 등을 협의하고 실제 납품받는데 있어 상당시일이 소요되었다.

한편 관세청은 운용 중인 드론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⁹⁾하여 드론 기체 추락 등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 보험회사는 도입된 드론 기종에 대하여 야간 운용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간 운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사고분에 대해서는 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관세청은 야간 감시 활동을 위하여 야시경 카메라 5대를 구입하였으나 드론의 추락 등 사고로 인한 인적사고, 기체 파손 및 재물 손괴 발생 우려로 야간 운용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관세국경에서 범법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야간에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감시 장비로서 드론 도입의 효과성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드론과 같은 국내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국산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활용하도록 할 필요성은 있으나, 정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수준¹⁰⁾ 등을 함께 고려하여 도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고려없이 드론 도입을 하는 경우, 사업에 드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드론 구매시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8) 관세청 드론운용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해당 업체의 드론을 도입한 군부대 등 타 기관에서도 이유없이 드론 기체 추락 등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조작의 용이성, 전파간섭으로부터 안정성이 떨어져 실제 감시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9) 관세청은 2019년 12월부터 1년간 연간 드론 1대당 320만원, 총 3,2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10) 예컨대 전파간섭으로부터 안정성 확보 기술 수준이 낮은 드론의 경우, 항공기·선박 등의 잦은 출입으로 전파간섭이 심하게 나타나는 공항·항만이나 군부대에서의 운용은 어려우나 전파간섭이 적은 산림·임야 지역에서는 충분한 활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¹¹⁾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의 예외 사유로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에 항만 등 감시업무에
적절한 드론 기술 보유가 해당되는지를 엄밀하게 검토하고 도입을 결정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
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가. 현황

여행자통관 선진화¹⁾는 국외 여행자에 대한 통관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방지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은 22억 5,500만원으로 이 중 19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9,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여행자통관 선진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여행자통관 선진화	2,255	2,255	-	-	2,255	1,958	-	297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2019년 11월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나, 일반 여행자들의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문제점이 있다.

국외여행 후 입국자는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다.²⁾ 관세청은 기존에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입국편 항공기의 기내에서 배부하도록 하거나 입국장에 비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19.11.25.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일반 내국인 여행자들³⁾도 스마트폰 등 모바일

이광근 예산분석관(kklee@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131-302

2)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3) 11월 25일 이전에 항공사 승무원을 대상으로 휴대품 모바일 신고제를 시범실시하였다.

기기를 통한 방법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서는 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접속하거나 ② 모바일 관세청 앱을 통해 작성·제출이 가능하며,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기본정보를 매 입국시마다 작성할 필요없이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 비행 중인 기내에서도 편리하게 작성이 가능하다. 작성 및 제출이 완료되면 신고내용이 저장된 QR코드가 발급되고, 발급된 QR코드를 세관 구역의 모바일심사 전용 게이트에서 스캔하면 별도의 종이신고서 제출없이 자동심사가 완료된다.

[관세청 앱을 이용한 모바일 여행자 휴대품 신고 이용화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기본정보	신고안내사항
세관신고사항	
1.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한 면세범위 초과 물품 ※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시면 관세의 30% (15만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있음 없음 총금액(약)을 입력
2.FTA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있음 없음
3. 미화로 환산하여 \$10,000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원화·달러화 등 법정통화,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및 그 밖의 유가증권)	있음 없음 총금액(약)을 입력
4. 총포류, 도검류, 마약류 및 헌법질서·공공의 안녕질서·풍속을 해치는 물품 등 반입이 금지 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있음 없음
5.동물, 식물, 육가공품 등 검역대상물품 또는 가축전염병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	있음 없음
6.판매용 물품, 업무용 물품(샘플 등),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예치 또는 일시수출입 물품	있음 없음
▶주류·향수·담배(면세범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체 반입량을 적습니다.)	
주류 병 총 ℓ 금액 US \$	
담배 갑(20개비 기준) 향수 ml	

자료: 모바일 관세청 앱 화면을 직접 캡처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는 혼잡시간대에 종이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한 대기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개인정보를 매 입국시마다 반복해 입력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언택트(untact)가 확산 되는 상황에서 종이신고서의 전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전파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종이신고서 출력을 감소시켜 자원을 보호하고 비용⁴⁾을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도입 이후 항공사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여행자 중 모바일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한 이용건수는 2020년 3월말까지 단 884건에 불과하여 전체 입국건수 대비 0.06% 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이용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9.11.25.~12.31	2020.1.1~3.31
승무원 이용건수 (이용률)	14,509 (23.9)	24,109 (22.4)
일반여행자 이용건수 (이용률)	413 (0.07)	471 (0.05)
이용건수 합계	14,922	24,580

주: 이용률은 모바일을 통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제출이 가능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입국자 중 실제 모바일을 통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자 비율
자료: 관세청

이와 같이 모바일 신고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시행 초기로 일반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았고, 2020년 초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국외여행자 수가 줄었다는 점, 모바일을 통한 휴대품 신고서 작성 및 제출로 신고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QR코드 발급 후 이를 세관구역에 위치한 별도의 모바일심사 전용 게이트에서 스캔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시행 초기 일반 여행객들에게 다소 번거롭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4)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출력 비용은 연간 1~2억원 정도이다.

[세관구역 모바일 전자심사 전용게이트 현황]



자료: 관세청

관세청의 2019년 7월 “캐나다 밴쿠버 공항 무인입국신고대 및 휴대품 검사” 사례 조사를 위한 국외출장보고서를 참조하면 캐나다의 밴쿠버 공항에서는 무인 출입국신고를 위한 키오스크(KIOSK)에서 세관 신고도 통합하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이후 발급된 QR코드를 출입국 신고 키오스크에 스캔, 출입국심사와 세관 신고를 동시에 완료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완료하더라도, 공항 내 입국심사 게이트에서 입국심사 절차 완료 후 다시 별도의 세관 게이트에서 세관 신고를 위해 QR코드 스캔을 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세관 직원에게 종이 신고서를 단순 제출하는 것에 비하여 이용자들이 번거롭게 생각할 소지가 커서, 이러한 불편성이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이용 실적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캐나다 공항의 자동출입국 및 모바일 세관신고 절차 비교]

입국절차	한국	캐나다
입국심사 (키오스크 내 여권지문 스캔 및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진행)	자동출입국서비스(SES) 키오스크에서 실시	무인출입국 신고대(PIK KIOSK) 에서 입국심사와 세관신고 동시 실시
세관 신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제출 등)	세관구역에서 종이 신고서 세관 직원에게 제출 또는 모바일 신고후 세관 모바일 전용심사 게이트에 QR코드 스캔하여 통과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따라서 모바일 휴대품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국심사와 세관 신고의 통합 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공항 내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부처인 법무부는 출입국심사와 세관신고는 별도의 절차라는 이유로 입국심사와 세관신고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여행자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모바일 전자신고 방법·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기능을 개선하고, 일반여행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일반 여행자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기계기구매각대¹⁾는 국가가 보유한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세관보유 감시정, 차량 등 내용연수가 경과한 기계기구의 매각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도 예산액은 1억 4,400만원이었으나 6,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2019회계연도 감시정 관련 세입 과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세입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기계기구매각대	144	144	144	64	64	0	0	100.0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감시정 매각 과정에서 여러차례 유찰이 발생하여 매각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매각된 감시정도 매각수입이 예정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9년 관세청은 내구연한이 도과된 감시정 3척²⁾을 매각하기로 계획하고 감시정 매각을 통한 기계기구매각대 세입예산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당초 매각 계획된 3척 중 1척만이 매각되었으며, 당초 매각 계획은 없었으나 내구연한이 도과된 감시정 1척³⁾을 매각절차를 진행, 2020년 1월에 매각 완료하였다.

이와 같은 4척의 감시정 매각 진행 내역을 살펴보면, 매각된 감시정은 전문 감정업체에 대하여 잔존 가치평가를 의뢰하여 산출한 예정가격⁴⁾의 각각 50%, 58%

이광근 예산분석관(kklec@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71-712

2) 부산393호, 인천394호, 전남396호

3) 충남392호

4) 「국유재산법」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

수준으로 매각되었으며, 7회 유찰되었다. 한편 매각이 완료되지 못한 2척의 감시정은 7회 이상 유찰되었으며, 한 척은 2020년 7월에 이르러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다른 한 척은 2020년 7월 현재까지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9회계연도 감시정 매각 진행 내역]

(단위: 천원, %)

감시정명	예정가격 (A)	매각금액 (B)	최초 공개입찰일자	계약일자	유찰횟수	비고
인천394	81,120	-	2019.4.9	-	11회	2020년 매각절차 재진행
부산393	77,971	39,000	2019.5.24	2019.9.20	7회	
전남396	235,365 (162,480) ¹⁾	-	2019.6.19		7회	2020.7.8. 계약 체결
충남392	78,480	45,769	2019.8.5	2019.11.1	7회	

주: 1) 전남396호는 2억 3,537만원에서 1억 6,248만원으로 감정가격이 재평가되었으며, 선박규모가 관세청 보유 다른 감시정(30여톤 규모)에 비해 대형으로(86톤) 감정가격이 높게 책정됨.

자료: 관세청

내구연한이 도과한 노후 감시정은 건조 직후에 비하여 속력 및 선회력 저하로 기동성이 필요한 해상 감시 업무에 활용하기는 어려우나 기타 해상 업무 용도로는 추가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시에 적정 가격 판매를 통한 재정충당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감시정 매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예정가격 대비 매각금액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선박 매입수요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4~8월 중 4척의 감시정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 매입 수요를 분산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⁵⁾ 이에 따라 여러 차례 유찰이 발생하면서 세 번째 입찰부터 매회 100분의 10씩 그 예정가격이 감소되었다.⁶⁾

려하여 결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5) 관세청은 노후 감시정을 2017년 4척 매각한 이후, 2018년에는 매각하지 않다가 2019년에는 다시 총 4척의 감시정의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

6)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

관세청은 현재 매각절차 진행중인 감시정 외에 총 8대의 내구연한 도과 감시정을 보유중으로 2021년부터 선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내구연한을 도과하여 노후화된 감시정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히 선령에 따른 순차적인 매각보다는 감시정의 매각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매각계획을 관리하고, 감시정 매각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노후감시정이 적정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 내구연한 감시정 매각 계획]

세관	감시정명	내구연한 (년)	선령 (년 현재 기준)	매각계획 (년도)
동해	강원397호	15	21	2021
경남남부(통영)	경남398호	15	20	2022
목포	전남399호	15	18	2024
광양	전남301호	15	18	
부산	부산302호	15	16	2026
대전(대산)	충남303호	15	16	
인천	인천304호	15	16	
목포	전남305호	15	16	

자료: 관세청

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조달청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966억 1,000만원이며, 4,604억 5,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104.5%인 4,143억 4,900만원을 수납하고 461억 800만원을 미수납하고 1백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조달특별회계	395,410	396,610	396,610	460,458	414,349	46,108	1	104.5

자료: 조달청

2019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969억 5,800만원이며, 이 중 94.0%인 3,732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5억 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조달특별회계	394,210	396,610	396,958	373,292	2,166	21,501	94.0

자료: 조달청

나.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9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액 대비 26억 8,800만원(1.1%)이 감소한 2,442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82억 7,100만원(3.5%)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수입	235,937	246,896	246,896	244,208	△2,688	8,271

자료: 조달청

2019회계연도 조달청 총지출은 예산액 대비 64억 2,500만원(4.7%)이 감소한 1,299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68억 9,500만원(5.6%)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지출	123,045	135,165	136,365	129,940	△6,425	6,895

자료: 조달청

다.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조달청의 자산은 2조 144억 7,300만원, 부채는 112억 5,600만원으로 순자산은 2조 32억 1,7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357억 9,500만원(1.7%) 감소한 것으로 유동자산 1조 3,984억 1,900만원, 일반유형자산 6,016억 3,200만원, 무형자산 70억 2,9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2018회계연도 대비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전출금 집행액 증가분 166억 3,400만원, 차년도 이월금 74억 8,400만원 감소, 조달사업 실적 증가에 따른 연도 말 납입고지 금액 증가로 미수채권 76억 300만원 증가, 조달품질원 건물 재평가로 인한 건물 및 구축물 142억 100만원 감소, 불용물품 폐기 등으로 13억 5,3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5,500만원(0.5%) 증가한 것으로 선수수익이 3억 9,600만원 증가하였으나 유동성금융리스부채 9,800만원 감소, 장기차입부채 유동성대체로 1억 8,900만원 감소 등이 상계되었다.

[2019회계연도 조달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014,473	2,050,268	△35,795	△1.7%
Ⅰ. 유동자산	1,398,419	1,415,510	△17,091	△1.2%
Ⅱ. 투자자산	3,903	4,065	△162	△4.0%
Ⅲ. 일반유형자산	601,632	618,925	△17,293	△2.8%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7,029	7,831	△802	△10.2%
Ⅵ. 기타비유동자산	3,490	3,937	△447	△11.4%
부 채	11,256	11,201	55	0.5 %
Ⅰ. 유동부채	4,608	4,364	244	5.6 %
Ⅱ. 장기차입부채	6,644	6,833	△189	△2.8%
Ⅲ. 장기충당부채	-	-	-	-
Ⅳ. 기타비유동부채	4	4	-	-
순 자 산	2,003,217	2,039,067	△35,850	△1.8%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손실이 349억 3,407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055억 2,900만원, 관리운영비 379억 9,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248억 3,000만원, 비배분수익 219억 1,300만원, 비교환수익 등 △1,239억 5,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18억 1,800만원(15.3%) 감소한 △890억 2,0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 수익이 178억 8,000만원 증가하여 프로그램 순원가가 감소하였고, 자산재평가손실 61억 2,400만원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조달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19,302	△109,622	△9,680	8.8%
가. 프로그램 총원가	105,529	97,328	8,201	8.4%
나. 프로그램 수익	224,830	206,950	17,880	8.6%
II. 관리운영비	37,994	37,606	388	1.0%
III. 비배분비용	14,202	20,423	△6,221	△30.5%
IV. 비배분수익	21,913	25,609	△3,696	△14.4%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89,020	△77,202	△11,818	15.3%
VI. 비교환수익 등	△123,954	△105,383	△18,571	17.6%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4,934	28,181	6,753	24.0%

자료: 조달청

조달청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2조 390억 6,6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조 32억 1,700만원으로 기초 대비 358억 4,900만원(1.8%)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회계연도 중에 적립금 및 잉여금 349억 3,400만원 감소에 기인한다. 또한, 2019회계연도 조정항목은 일반유형자산(토지·건물·구축물)의 처분 및 감가상각 등에 의한 재평가이익 상계에 따라 △9억 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9회계연도 조달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2,039,066	2,057,059	△17,992	△0.9%
II. 재정운영결과	34,934	28,181	6,753	24.0%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	-	-	-
IV. 조정항목	△915	10,188	△11,103	△109.0%
V. 기말순자산(I-II+III+IV)	2,003,217	2,039,066	△35,849	△1.8%

자료: 조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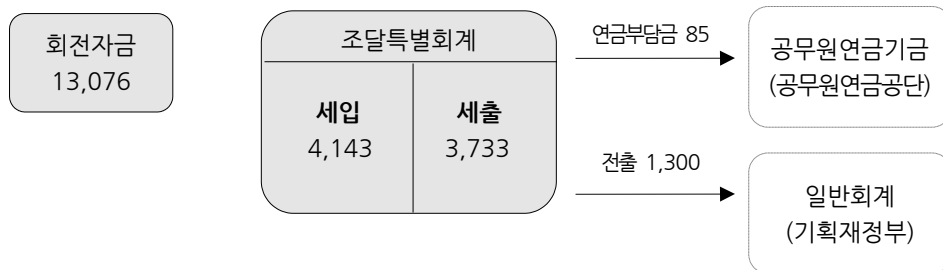
라. 재정 구조

2019회계연도 조달청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조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300억원 전출되었다. 다음으로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조달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연금부담금 85억원을 전출하였다.

[2019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조달청

조달청의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 **위약금 사업**이 있다.

2017~2018년도 위약금 수납추이를 반영하여 위약금 예산이 18억 6,000만원 증액(52억→70억 6,000만원) 되었다¹⁾.

1) 기획재정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 2018.11.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8.

조달청은 ① 조달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기술견인 조달제도 확대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성장과 기술혁신 촉진**, ②조달사업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일자리 창출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상생, 협력의 투명·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 ③ 빅데이터·클라우드에 기반한 고객중심 조달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능형·참여형 고객중심 조달시스템 구축**, ④가격조사·원가검토 강화 및 민관협업을 통해 **적정가격 보장 및 고품질의 서비스로 조달가치 극대화** ⑤ 국유재산 및 원자재 비축관리 효율화에 대한 **효율적인 계약관리 지원 및 국가자산 관리**, ⑥조직·문화 혁신 및 조달인재 육성을 통한 **고객중심 조달행정 추진기반 구축** 등을 2019년 주요 예산 편성 및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공공혁신조달사업(테스트베드) 사업은 연례적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의 지연요소들을 관리하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 위해서 혁신시제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으며, 테스트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달청은 향후 부산 금곡비축기지 매각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1

혁신시제품 사업 관리 필요

가. 현 황

조달청은 혁신제품의 공공수요 발굴 및 확대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고자 2019년부터 공공혁신조달사업(테스트베드)¹⁾을 편성하였다. 공공혁신조달사업은 상용화 전 단계의 혁신제품²⁾을 공공기관이 테스트하고 결과를 피드백하여 기술혁신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선정·구매하여 테스트기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2019년 본예산은 12억원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2억원이 증액되어 2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7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2,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6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19년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1,410	2,610			2,610	980	1,526	104
공공혁신조달사업 (테스트베드)	1,200	2,400			2,400	788	1,526	86

자료: 조달청

공공혁신 조달사업은 ① 혁신제품 제안 및 평가, ② 혁신제품과 테스트기관 매칭 및 계약, ③ 테스트결과 피드백 및 상용화 지원의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이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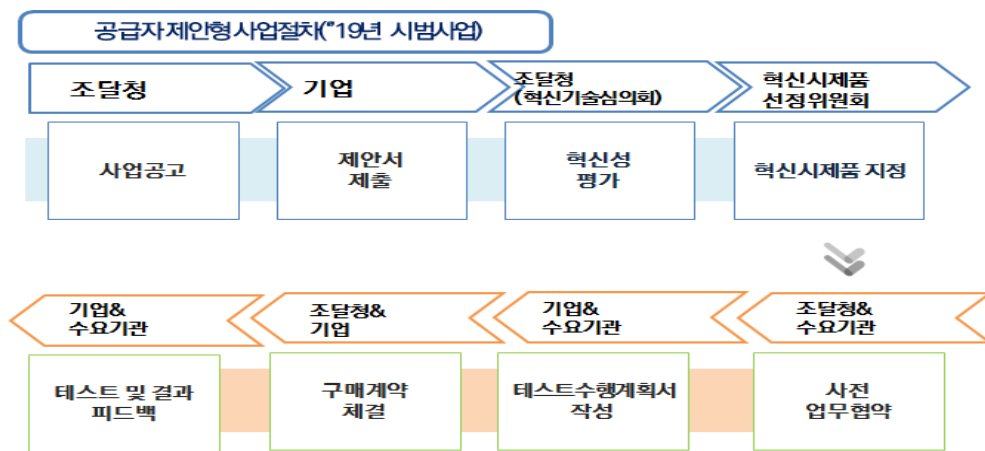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7-433

2) 본예산에서는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 사업분야(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된 분야로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 공장, 초연결지능화, 스마트팜) 제품이 대상이었으며, 추경에서는 미세먼지 분야를 추가하였다.

정에서 조달청은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주체인 혁신 기업과 수요주체인 공공기관을 직접 연결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양측의 위험을 완화하고 혁신제품 수요를 발굴하게 된다. 2019년 공공혁신조달사업은 공급자 제안형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기술혁신제품을 제안하여 테스트하는 사업이다³⁾.

[공급자(혁신업체) 제안형]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첫째, 연례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의 지연요소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공혁신조달사업은 2019년 35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28개 제품을 매칭하여 계약하였으나, 현재까지 테스트가 완료된 실적은 4건에 불과하다.

조달청은 혁신제품을 매칭 및 계약하여 구매 및 테스트 이후 테스트 결과를 피드백까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제품별로 상이하나 2019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소요된다고 밝혔다.

3)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2019년에 비해 75억원을 증액하면서 조달청은 공급자 제안형 및 수요자 제안형 등 2종류의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수요자 제안형은 각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수요를 공모하여 선정된 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모집하여 테스트하는 사업이다.

[테스트 완료 실적]

제품명	업체	테스트기관	수량	가격(원)
차량 내 간헐방지 경보시스템	□□전자	광주광역시교육청 등 3개 기관	7조	6,990,000
공간정보 감시정찰 KnX드론	○○텍	한국임업진흥원	2대	19,890,000
탄소섬유발열선 결빙방지 매트	카■□■□	국립공원공단 등 2개 기관	92개	27,600,000
고효율 하이브리드 농축/축매산화 시스템	엔△△△	한국화학연구원	1식	139,000,000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19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공고(조달청 공고 제2019-39호, 2019.3.11.)에서 제안분야 및 대상에 미세 먼지 저감 분야를 추가하여 정정공고(조달청 공고 제2019-62호, 2019.4.15.)하였다. 정정공고의 공공혁신조달 사업(테스트베드)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5월31일까지 모집 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받고 6~7월에 기술심의회 및 혁신제품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또한 8~9월에 수요기관 매칭 및 테스트 계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테스트를 실행하고 피드백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은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공공혁신조달 사업(테스트베드)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제안접수	모집공고를 통해 제안서 접수	'19.3.11. ~ 5.31.
시범구매 제품 풀 (pool)구성	기술심의회 및 혁신제품 선정위원회 구성('19.3~5월) 후 평가실시	'19. 6월 ~ 7월
테스트 계약	수요기관 매칭 및 테스트계약	'19. 8월 ~ 9월
테스트 실행	테스트 및 피드백	'19. 10월 ~

자료: 조달청

2019년 집행률이 32.8%로 저조하고 절반 이상의 예산이 이월된 이유로 조달청은 88개 수요기관에서 테스트 신청이 몰려 구매대상 및 테스트기관을 선정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테스트기관과 기업의 테스트 수행을 위한 계획서 및 업무협약서 작성·보완, 신제품 계약에 필요한 행정절차(조달등록, 목록등록), 신제품으로 거래실례 등 가격 참고자료가 없어 대다수 원가계산 자료에 의한 원가 검토 및 규격검토, 시제품의 특성 상 생산·납품 시일 소요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필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조달청은 2020년도에 사고이월 금액(15.2억원) 중 12.6억원을 집행하였고, 2.6억원을 집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020년도 본예산 규모 99억원을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94억 1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테스트 지연 여부에 따라 사고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조달청은 혁신제품 구매사업의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성과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절차 및 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의 집행지연요소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까지 제출된 테스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시제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완료된 4개 공공혁신조달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혁신시제품의 단가가 높다거나 사용의 제한가능성에 따른 성능 향상 필요, 하자담보기간 설정 등 개선 필요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인력 절감 등 효율성이 향상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동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테스트기관이 혁신시제품의 테스트 수행 이후 실제 구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혁신제품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테스트 제품의 구매에 대한 의견]

제품명	테스트기관	구매에 대한 의견
차량 내 간헐방지 경보시스템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부분 통학버스는 임대버사이므로 구매 및 설치하기에 시제품의 단가가 높음
	충청북도 교육청	제품의 기준이 적합하지 확인이 필요하고 가격대가 필요성에 비해 높음
	동해삼육초	초등학생 호기심으로 파손가능성이 크며, 의자에 가방이나 물건 존재시 사람으로 감지
공간정보 감시정찰 KnX드론	한국임업 진흥원	대규모 산림조사 시 타 제품에 비해 작업효율이 낮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며, 향후 제품의 성능향상 시 구매 가능
탄소섬유 발열선 결빙방지 매트	국립공원 공단	낙상사고 발생 예방에 효과적 및 염화칼슘 및 제설작업 인력 감소 등 효율적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자체예산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으나, 적정 하자담보기간을 정하는 등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고효율 하이브리드 농축/축매산화 시스템	한국화학 연구원	성능 측면에서는 우수하나 설치 및 운용비용 측면에서 가격이 높음(예산 확보 불가)

자료: 조달청

셋째,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테스트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공급자 제안형 공공혁신조달사업은 ① 제품을 먼저 선정하고 수요를 발굴하는 방식, ② 물품 구매를 실수요처가 아니니 조달청에서 부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R&D 사업과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조달청의 공공혁신조달사업은 타 사업들과는 달리 혁신시제품이 공공 수요에 따라 개발되는 것이 아니며, 완료 이후에도 수요기관이 제품 사용 및 구매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동 사업에서는 구매계약 체결 이후 테스트기관이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테스트 결과 또는 내실화 여부에 대해서는 테스트기관이 부담을 지지 않는다. 이는 혁신시제품 구매의 위험부담을 줄여 공공기관의 참여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하나, 반대로 수요기관의 책임감 있는 사업 참여에 대한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현재 종료된 4건

의 테스트에 대해 7개 기관이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형식에 맞춰 양호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테스트기관이 혁신시제품 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부분이 기관별로 일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다.

따라서 조달청은 테스트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테스트기관간의 업무협약 시 테스트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조달청은 부산 화전비축기지(부산시 강서구 화전동) 준공('10.6.15.)으로 노후화('81, '84년 준공)된 부산 금곡비축기지(부산시 북구 금곡동)의 활용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3년 3월 부산 금곡비축기지 일부(9,900㎡)를 부산시에 매각하고 동년 7월 잔여부지(46,175.8㎡)를 매각하기로 하였다.

2019회계연도 조달특별회계 세입에 부산 금곡비축기지 매각에 따른 건물매각대¹⁾ 1억 4,200만원, 토지매각대²⁾ 125억원 2,100만원,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수입인 기타재산수입³⁾ 4억 4,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매각 지연으로 미수납되었다.

[2019회계연도 부산 금곡비축기지 관련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기타재산수입	448	448	448				
건물매각대	142	142	142				
토지매각대	12,521	12,521	12,521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향후 부산 금곡비축기지 매각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2017~2019년 3년 연부로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를 계상하였다.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 1) 코드: 조달특별회계 71-711
- 2) 코드: 조달특별회계 72-721
- 3) 코드: 조달특별회계 54-545

하지만 2020년 7월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갖고 있어 경쟁처분 방식으로 매각 공고를 하여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고 민간 매각 보다는 부산시 북부지역에 산업용지를 제공한다는 공익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균형발전 도모 등의 대외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에 매각을 동의하였다. 하지만 부산시는 주거용지 축소를, 사업시행자는 주거용지 확대를 희망하는 이견으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2017년 12월 부산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주거용지 축소에 관한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을 조건부 가결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2019년 12월 주거용지축소 결정을 심의·통과하였다.

[부산 금곡비축기지 매각 추진경과]

일시	내 용
’13.3.7.	· 일부 부지(9,900㎡, 3,000평)를 부산시에 매각 · 부산시건설본부에서 ‘지식산업센터’ 건립 준공(’17.9월)
’13.7.9.	· 잔여부지(46,175.8㎡)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매각 승인
’14.6.26.	· 부산시 북구청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 사유로 매각처분 연기 요청
’14.8.1.	·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주)금곡벤처밸리 설립
’14.10.22.	· 사업시행자가 부산시에 투자의향서 제출(출입구 확보 문제로 투자의향서 철회 후 출입구를 부산청이 아닌 부지 내 다른 곳에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다시 제출(’15.2.26.))
’17.4~’17.10	· 유관기관 방문 통한 산업단지계획 조속 추진 요청
’17.12.27.	·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주거시설용지 축소 조건부 가결(17,401㎡→14,017㎡ 제안)
’18.2~3	· 주거시설용지 축소 내용으로 시행자측 자문회의 개최 · 북구지역 이해관계자 대상 주거용지 축소안 설명
’19.12.10.	· 부산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통과(주거용지축소 결정)
’20. 3.18.	·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 면적 : 46,264㎡ /사업시행자 : (주)금곡벤처밸리/개발기간 : ’20년~’22년
’20. 4.22.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사업시행자↔부산청)
’20. 5.11.	· 보상계획 통지(사업시행자→부산청)
’20. 5.18.	· 감정평가법인 추천(부산청→사업시행자)

자료: 조달청

2020년 주거시설용지 비율에 합의((당초) 37.8%(17,481㎡) → (변경) 27.8% (12,861㎡))하고 부산시가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을 승인·고시함(20.3.18.)에 따라 조달청은 다시 사업시행자와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조달청 추천 감정평가법인과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법인 2개사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매각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이 10% 이내일 경우 산술평균하여 매각금액이 결정되는 가격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가금액이 10% 이상일 경우 계약체결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조달청은 건물매각대, 토지매각대 등 수입예산의 수납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감정평가에 따른 가격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조속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2억 5,600만원이며, 44억 1,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3억 4,200만원을 수납하고 7,1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통계청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9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256	3,256	3,256	4,412	4,342	71	0	133.4

자료: 통계청

2019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834억 6,900만원이며, 이 중 96.6%인 3,703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31억 3,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통계청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9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82,482	382,482	383,469	370,333	0	13,136	96.6

자료: 통계청

나.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통계청의 자산은 2,280억 3,600만원, 부채는 12억 3,000만원으로 순자산은 2,268억 600만원이다.

자산은 전년 대비 144억 4,300만원(6.8%) 증가하였고, 이는 자본적 지출, 가격 평가 및 자산 인수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88억 7,100만원 증가, 내부개발 S/W 및 외부구입 S/W 등 무형자산 49억 1,0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10억 9,500만원(47.1%) 감소한 12억 3,000만원으로, 유동부채 4억 5,500만원과 장기차입부채 7억 7,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나라통계 등 유동성대체 15억 500만원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통계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28,036	213,593	14,443	6.8
Ⅰ. 유동자산	6,104	6,043	61	1.0
Ⅱ. 투자자산	553	235	318	135.3
Ⅲ. 일반유형자산	181,026	172,155	8,871	5.2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35,907	30,997	4,910	15.8
Ⅵ. 기타비유동자산	4,446	4,163	283	6.8
부 채	1,230	2,324	△1,095	△47.1
Ⅰ. 유동부채	455	1,963	△1,508	△76.8
Ⅱ. 장기차입부채	775	259	516	199.2
Ⅲ. 장기충당부채	0	102	△102	△100.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226,806	211,269	15,537	7.4
Ⅰ. 기본순자산	115,286	115,286	0	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74,046	63,292	10,754	17.0
Ⅲ. 순자산 조정	37,474	32,691	4,783	14.6

자료: 통계청

통계청은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822억 8,800만원 발생하였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755억 3,300만원(24.6%) 증가한 3,822억 8,800만원이며, 이는 외주용역비, 인건비 및 소모품비 등의 증가로 프로그램 총원가가 757억 5,700만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총 4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가장 큰 프로그램은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프로그램(1,462억 9,638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503억 2,577만원과 경비 209억 8,827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비용 8,001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통계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12,983	235,727	77,256	32.8%
가. 프로그램 총원가	316,000	240,243	75,757	31.5%
나. 프로그램 수익	3,017	4,516	△1,499	△33.2%
II. 관리운영비	71,314	72,625	△1,311	△1.8%
III. 비배분비용	1	66	△65	△98.5%
IV. 비배분수익	2,010	1,662	348	20.9%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382,288	306,755	75,533	24.6%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82,288	306,755	75,533	24.6%

자료: 통계청

통계청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2,112억 6,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268억 6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55억 3,700만원(7.4%)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국고수입 791억 9,000만원 증가, 기타재원조달 46억 3,400만원 증가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조달 등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47억 8,385만원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통계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211,269	206,212	5,057	2.5
II. 재정운영결과	382,288	306,755	75,533	24.6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93,041	311,355	81,686	26.2
IV. 조정항목	4,784	456	4,328	949.1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226,806	211,269	15,537	7.4

자료: 통계청

통계청의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는 ① 경제구조통계작성, ② 인구주택총조사, ③ 인건비-총액인건비 사업이 있다.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은 전국사업체조사 및 프랜차이즈실태조사 일부가 감액(117억 6,200만원) 되었고,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은 총액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 일부가 감액(2억 5,000만원) 되었고, 인건비-총액인건비 사업은 인건비 등 일부가 감액(1억 3,400만원) 되었다.

통계청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통계 개발·공유·개방·서비스 확대 요구에 따라 ①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화, ②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서비스 확대, ③ 국가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통계 생산, ④ 미래대비 국가통계 역량 강화를 2019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2019년에 시행한 3차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가구주택기초조사 결과 및 미흡한 부분을 반영하여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본조사) 실시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9년 개편된 가계동향조사 실시 후 지출부문의 시계열을 축적하여 이전 시계열과 연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시험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준비 필요

가. 현황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 및 전체 가구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인구주택총조사¹⁾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실시 예정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본조사에 앞서 조사항목, 새로운 조사방법 도입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2019년에 3차 시험조사와 본조사 준비를 위한 분야별 최종종합 점검을 위하여 시범예행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구분	1차 시험조사	2차 시험조사	3차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시기	D-3년 (‘17년 10~11월)	D-2년 (‘18년 10~11월)	D-1년 (‘19년 6~7월)	D-1년 (‘19년 10~11월)
주요 내용	- 조사구 설정방법 검토 - 모바일조사 도입 검토 - 조사기간의 적정성 검토	- 조사 항목 및 조사표 설계 검토 - 전자조사 전면 도입 가능성 검토 - 조사원의 적정 업무량 검토	- 조사항목 및 조사표 최종안 확정 - 전자지도 기반 태블릿 조사 실시 - 조사용품 타당성 점검	- 총조사 준비를 위한 최종 점검 - 전자조사 실시 관련 종합 테스트 - 분야별 개선 방안 현장 적용
조사 지역	대구 달서구 강원 평창군	광주 광산구 충남 논산시	서울 구로구 대전 서구 전북 무주군	부산 연제구 경북 청도군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일반회계 3034-307

구분	1차 시험조사	2차 시험조사	3차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사업 규모	6개 읍면동 10,000가구	6개 읍면동 6,600가구	7개 읍면동 8,800가구	2개 시군구(전체) 23,000가구
예산	429백만원	504백만원	410백만원	1,342백만원
필요 성	대규모 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사환경 및 현장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 수립 조사 효율성 증진을 위한 모바일조사 등 새로운 조사 방법 도입 타당성 검토 태블릿조사(CAPI), 전화조사(CATI), 시군구 통합상황실 운영 등 전자조사 전면 실시방안을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에 적용하여 최적의 수행방안 도출			

자료: 통계청

또한 2019년에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가구·주택의 변화를 반영하고 현장과 행정자료의 차이를 보완하여 등록센서스²⁾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구주택기초조사도 실시하였다.

[가구주택기초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2019. 11. 6. ~ 11. 25. (20일간), 5년 주기
조사방법	거처(건물) 현장 확인 및 가구 방문 면접조사
조사대상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빈집 포함) 23백만 호
조사체계	통계청(주관), 지방자치단체(실시)
조사항목	거처종류, 농림어가여부, 거주가능 가구수 등 (‘14년 9개→’19년 12개)

자료: 통계청

2) 전국의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새로운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은 2019년 예산 320억 3,200만원 중 298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다. 내역사업인 시험조사 사업은 2019년 예산 4억 1,000만원 중 4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이 불용되었고, 시범예행조사는 13억 4,200만원 중 9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다. 내역사업인 가구주택기초조사 사업은 2019년 예산 295억 7,600만원 중 278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5,4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인구주택총조사	32,032	32,032	△63	31,969	29,879		2,090
시험조사	410	410		410	408		3
시범예행조사	1,342	1,342	18	1,361	946		414
가구주택기초조사	29,576	29,576	△81	29,495	27,841		1,654

자료: 통계청

나. 분석의견

2019년에 시행한 3차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가구주택기초조사 결과 및 미흡한 부분을 반영하여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본조사) 실시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3차 시험조사는 91.7%(인터넷 조사를 29.7%), 시범예행조사는 97.6%(인터넷 조사를 26.0%)로 조사가 완료되었다.

[3차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결과]

(단위: 가구, %)

구분	조사 대상	조사 완료								부재	불응
			인터넷			전화	방문면접				
			소계	모바일	PC		소계	태블릿	종이		
3차	8,062	7,390	2,398	1,479	919	327	4,665	4,614	51	598	74
시험	100.0	91.7	29.7	18.3	11.4	4.1	57.9	57.2	0.6	7.4	0.9
시범	18,565	18,126	4,820	3,170	1,650	1,486	11,820	11,804	16	198	241
예행	100.0	97.6	26.0	17.1	8.9	8.0	63.7	63.6	0.1	1.1	1.3

자료: 통계청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는 전국단위의 대규모 조사 최초로 전자지도 기반의 태블릿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에 효율을 기하고 정확성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즉, CAPI³⁾ 도입에 따라 현장조사 동시에 입력·내용검토가 가능하여 자료처리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다. 가구주택기초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⁴⁾를 설정하고 등록센서스의 항목 확대(‘15년 12개→’20년 16개)와 신규 통계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가구주택기초조사 결과 전국의 거처는 18,894,242 거처로 나타났으며, 가구는 22,146,086 가구로 나타났다.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결과]

(단위: 천거처, 천가구, %)

거처			가구				
당초 ¹⁾	결과	증감	당초 ¹⁾	결과	주택	주택이외	증감
19,545	18,894	△650	23,229	22,146	21,391	755	△1,082
100.0	96.7	△3.3	100.0	95.3	96.6	3.4	△4.7

주: 1) 등록센서스(‘17년) + 건축물대장 자료(‘19.2) + 도로명주소(‘19.4) + 입주예정아파트(‘19.7)
자료: 통계청

통계청은 시험조사와 시범예행조사를 실시하면서 미흡한 점으로 ① 조사원 교육, ② 시설 조사구 전담 조사 방안, ③ 콜센터 인력운영, ④ 인터넷조사 인센티브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첫째, 태블릿 실습 교육교재가 동영상으로 제작되지 않아 태블릿 교육 이후에는 태블릿 실습이 곤란한 점이 있어 조사원의 태블릿 교육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 조사구(전수조사)는 일반 조사구(표본조사)와 특성이 달라 시설 조사구와 일반 조사구를 혼합하여 업무량을 배정하는 혼합배정보다는 전담 조사원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화조사가 집중되는 인터넷조사 기간 중 최대 인력을 배치하고 상담인력(3개 시군구, 7개 읍면동 담당 상담인력 2명)을 증원할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 및 전화조사

3) CAPI(Computer-Aided Personal Interviewing)는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조사·전자조사이다.

4) 인구주택총조사·농림어업총조사를 위해 확정된 경계로 평균 60가구로 구성된다.

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본조사를 진행 시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이를 고려하여 안전한 콜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터넷 및 전화 조사 참여에 대한 홍보 및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결과 대규모조사 최초로 ‘전자조사 도입’이라는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전 준비 기간이 짧아 이에 대한 준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초반 통합관리시스템 불안정으로 사이버 교육의 수강률이 측정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고, 산지 지역 등 일부 데이터가 원활하게 수신되지 않는 지역은 모바일 강의 수강이 곤란하였다. 둘째, 통신이 미약하여 온라인 상태에서 CAPI 시스템에 의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고 오프라인 상황에서 시스템이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업무적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상황실이 종이조사 방식의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전환되면서 주민 접점의 읍면동 역할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태블릿 이용 약관 동의서를 작성하여 파손 및 분실에 대응하였으나 충전기, 터치펜 분실, 태블릿 파손 정도에 따른 수리 여부 및 수리금액 등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본조사에 앞서 2019년에 실시한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및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결과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본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통계청은 2020 인구주택총조사 개선방안(중합시행계획수립 4월)에서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가구주택기초조사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

가계동향조사 시계열 연결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가계동향조사 사업¹⁾은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사로, 사회통계작성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가계동향조사 사업은 2019년 예산 159억 4,900만원 중 △55억 300만원을 전용(통계조사답례품 일원화 등)하고 103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년 사회통계작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회통계작성	35,771	35,771	△6,203	29,568	29,118	0	450
가계동향조사	15,949	15,949	△5,503	10,446	10,328	0	11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전국 가구 중 표본을 추출하여 가구 단위의 소득, 지출부문에 대해 조사하여 가계수지, 소득분배 현황 등을 공표하는 조사로, 1963년 조사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표본개편 및 비목확대 등이 이루어져왔다. 가계동향조사는 2016년, 2018년 두 번에 걸쳐 소득부문·지출부문 간의 분리 및 통합을 두고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 진행되었다.

① 개편 이전의 舊가계동향조사

舊가계동향조사는 2016년까지 소득부문·지출부문을 통합적으로 조사하였으며, 표본 가구('16년 기준 8,700가구)가 36개월 간 소득, 지출에 대한 항목을 가계부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동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공식소득분배지표

이강구 예산분석관(klcc@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일반회계 3032-304의 내역사업

(지니계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舊가계동향조사는 한 가구가 36개월동안 매월 가계부를 작성함에 따라 응답부담 등의 문제로 응답거부가 증가²⁾하고, 고소득층이 소득을 축소 기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식소득분배지표의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舊가계동향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일반가구 (농어가 제외)	공표 항목	가계 수지	흑자율, 소비성향, 처분가능소득
표본규모	약 8,700가구		소득 분배	분기 : 5분위배율 연간 : 5분위배율, 빈곤율, 지니계수
조사표	가계부		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응답기간	36개월		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공표주기	분기 (5분위 배율은 분기별 발표)			
개편 내용 (2017년)	▶ 36개월간 가계부 작성 방식으로 조사 응답거부 증가 → ▶ 가계지출조사로 특화, 1개월 순환 가계부 및 면접조사표 방식으로 변경 ▶ 고소득층 소득 반영률 낮음 → ▶ 고소득층 소득 반영률 높은 가계 금융복지조사로 대체			

자료: 통계청

② 2017~2018 가계지출조사·가계소득조사로의 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은 2017년부터 공식소득분배지표의 기초자료를 고소득층의 표본대표성이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³⁾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舊가계동향조사는 응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간 주기의 가계지출 통계로 특화하여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로 재편⁴⁾하는 한편, 소득부문의 조사는 시의성 있는 동향파악 및 장기 시계열 분석 등을 위해 분기소득통계가 필요하다는 정부부처, 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로 유지하게 되었다.

2) 구(舊) 가계동향조사의 응답률은 2010년 80.6%에서 2015년 75.4%(도시지역은 60%수준)로 감소하였다.(통계청, 「소득분배지표 공표 관련」, 2017.12.21.)

3)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자산, 부채, 소득 등 가구의 종합적인 재무건전성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로, 2010년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4) 지출부문 조사는 개편 과정에서 ① 표본 확대(월 1,000가구, 연간 12,000가구), ② 표본 추출 변경(기존의 경제활동조사 표본을 함께 사용하던 방식에서 가계동향조사 전용 표본 방식으로 변경), ③ 표본체계 변경(36개월 간 조사에서 1개월 순환으로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

[2017~2018 가계지출조사·가계소득조사 개요]

가계지출조사			가계소득조사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일반가구 (농어가 포함)		조사대상	일반가구 (농어가 제외)	
표본규모	연간 12,000가구 월 1,000가구(1/12 순환)		표본규모	'17년 약5,500가구 '18년 약8,000가구	
조사표	가계부, 면접조사표		조사표	면접조사표	
응답기간	1개월		응답기간	36개월	
공표주기	연간		공표주기	분기	
공표 항목	가계수지	-	공표 항목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
	소득분배	-		소득분배	5분위배율
	소득	-		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지출	비소비지출
개편 내용			▶ 분기별 소득 지표의 부재 → ▶ 가계소득조사 유지(분기별 공표)		

자료: 통계청

③ 2019년도 가계동향조사 개편

통계청은 지출과 소득통계가 연계되어 분석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기별 통계가 필요하다는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의 의견에 따라 다시 가계지출조사와 가계소득조사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2018년 9월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예산에는 가계소득조사 일시병행을 위한 예산 29억원과 새가계동향조사를 위한 예산 130억원이 편성되었다.

[개편된 가계동향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일반가구 (농어가 포함)	공표 항목	가계 수지	흑자율, 소비성향, 처분가능소득			
표본규모	약 7,200가구		소득 분배	5분위배율			
조사표	가계부		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응답기간	12개월		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공표주기	분기 (지출만 연간 공표)						
개편 내용 (2019년)	▶ 소득부문과 지출부문 조사 간의 연계 불가			→	▶ 소득부문과 지출부문 조사 통합		
	▶ 통합 이후 가계부 작성 방식, 고소 득층 소득반영률 문제 검토 필요			→	▶ 응답기간 축소(12개월), 표본 체계 변경(전용표본 사용)		

자료: 통계청

2016년까지의 舊가계동향조사, 2017~2018년 가계소득조사·가계지출조사, 2019년의 新가계동향조사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계동향조사 개편 전후 비교표]

		~ 2016년	2017년 ~ 2019년	2017년·2018년	2019년 ~
		舊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지출부문	新가계동향조사
조사대상		일반가구 (농어가 제외)	일반가구 (농어가 제외)	일반가구 (농어가 포함)	일반가구 (농어가 포함)
표본설계		경제활동인구조사 다목적 표본	경제활동인구조사 다목적 표본	전용표본	전용표본
표본규모		약 8,700가구	'17년 약5,500가구 '18·'19년 약8,000가구	연간 12,000가구 월 1,000가구(1/12 순환)	약 7,200가구
조사표		가계부	면접조사표	가계부, 면접조사표	가계부
응답기간		36개월	36개월	1개월	12개월(6-6-6) ¹⁾
공표주기		분기	분기	연간	분기 ²⁾ (지출만 연간 공표)
고 표 항 목	가계 수지	흑자율, 소비성향, 처분가능소득	처분가능소득	-	흑자율, 소비성향, 처분가능소득
	소득 분배	분기 : 5분위배율 연간 : 5분위배율, 빈곤율, 지니계수	분기 : 5분위배율	-	분기: 5분위배율
	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개 편	고소득 표본	▶ 고소득층 소득 반 영률 낮음	▶ 가계금융복지조사 로 대체		▶ 표본 체계 변경 (전용표본 사용)
	응답 부담	▶ 36개월 가계부 방 식으로 응답거부 증가		▶ 1개월 순환 가계 부 및 면접조사표 방식 변경	▶ 응답기간 축소(12 개월)
	소득 지출 연계		▶ 분기별 소득지표 위 한 소득조사 유지	▶ 소득과 지출 간의 연계 불가	▶ 소득부문과 지출 부문 조사 통합

주: 1) 6-6-6 표본연동체계로, 6개월 조사 후 6개월간의 휴식 이후 다시 6개월 추가조사를 하는 방식임

2) 시계열 연결을 위해 2019년에는 기존의 소득부문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2019년 新가계동향 조사의 결과는 2020년 5월 공표

자료: 통계청

나. 분석의견

2019년 개편된 가계동향조사 실시 후 지출부문의 시계열을 축적하여 이전 시계열과 연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2019년 개편된 가계동향조사의 주요 특징으로 ① 시계열 비교성 확보, ② 표본설계 개선, ③ 통계지표 확대 제공, ④ 추정방법 개선, ⑤ 모집단 대표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첫째, 2019년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와 소득-지출을 통합한 가계동향조사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시계열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응답기간을 36개월에서 12개월(6-6-6 연동)로 축소하고 추정소득을 추출변수로 활용하여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응답부담 경감 및 고소득층 포착률을 높이기 위한 표본체계 및 표본설계를 개선하였다.

[개편 전후 소득 구간별 분포 비교(2인 이상 비농림어가)]

(단위 : %, %p)

구분	전체	200만원 미만	200~ 400만원 미만	400~ 600만원 미만	600~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800만원 이상
2019. 1/4(A)	100.0	18.2	28.0	25.4	21.7	6.7	14.0
2019. 1/4(B)	100.0	14.8	27.2	27.2	22.4	8.4	16.2
비교(B-A)	100.0	-3.4	-0.8	1.8	0.7	1.7	2.2

주: 2019년 자료는 (A)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결과와 (B)가계동향조사 결과로 구분
자료: 통계청

셋째, 가계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가계수지 지표를 생산하여 가계의 재무건전성 등을 진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가계수지 주요 지표(2인 이상 비농림어가)]

(단위 : 천원, %)

	흑자액 ¹⁾	흑자율 ²⁾	평균소비성향 ³⁾	적자가구 ⁴⁾ 비율
2020. 1/4	1,413	32.9	67.1	22.7

주: 1)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2) (흑자액/처분가능소득)×100
 3)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4) 처분가능소득 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
 자료: 통계청

넷째, 모집단 지역층, 가구원수 및 가구주 연령층을 반영하여 불균등 추출률 및 비포함 오차 등으로 발생하는 편향을 축소하는 등 추정방법을 개선하였다.

[가구주 연령대별 분포(1인 이상 가구)]

(단위 : %)

구분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19. 1/4(A) ¹⁾²⁾	16.0	22.7	23.2	38.2
2019. 1/4(B) ²⁾	22.9	22.0	23.8	31.3
2019(장래가구추계, 2017년기준)	22.7	21.3	23.8	32.2

주: 1) 2019(A)는 농림어가 제외 2) 가계동향조사는 비혈연가구, 외국인 가구 등은 제외
 자료: 통계청

다섯째, 조사모집단을 농림어가 포함한 전국 일반가구로 확대하여 포괄률(coverage)을 기존의 94.7%에서 개편후 99.8%로 높였다.

통계청은 개편 이전과 이후의 시점 간 비교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에는 두 가지 방식의 조사를 동시에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반적으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소득통계의 경우 2019년 이후 통합·개편과 2016년까지의 시계열, 2017~2019년 소득부문 시계열의 구성비 및 증감률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시계열 간 금액자료의 비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통계의 경우 표본설계, 조사방법 변경, 연간통계로의 개편에 따라 2017~2018년 결과는 2019년 이후 통합·개편과 2016년까지의 시계열과는 직접 비교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 이후 지출통계는 2016년 이전조사와 조

사방법이 가계부 방식으로 동일함에 따라 분기별 증감을 추이 및 구성비 등은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통계청은 향후 시계열이 축적되면 연계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통계개편에 따른 통계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2019년에 실시한 시계열 안정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시계열 모형 등을 통해 시계열 연장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2019년 개편 이후의 시계열을 축적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개편 이후의 지출부문 시계열을 축적하면서 연계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청은 향후 통계조사방식 변경 시 시계열 불안정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집 필

총괄 | 김 일 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서 세 옥 사업평가심의관
신 은 호 산업예산분석과장
김 태 규 사회예산분석과장
이 종 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이 동 훈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윤 여 문 예산분석관
홍 선 기 예산분석관
이 강 구 예산분석관
이 광 근 예산분석관

지 원 | 황 아 람 예산분석관보
인 정 은 행정실무원
홍 수 현 자료분석지원요원

결산분석시리즈 II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0년 8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후
편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태영특수프린테크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289-6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0